

202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2026. 1.

(보완편 1차)

※ 이 (보완편) 편람은 2025년 1월 공개된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초안)의 평가개요, 평정기준과 평가내용 중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기존 공개된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평가 시행 전에 내용을 추가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I. 202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
2. 평가개요	2
3. 평가단계와 절차	6
II. 202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8
1. 2027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지표	8
2. 2027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지표	58
3. 2027년 청소년특화시설 종합평가 지표	110

제 I 장

202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 평가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유도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 2
 - * 2014년 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사·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18년 6월 13일부터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평가 추진방향

- 평가대상 기간 중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해당 평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24년 12월 완료 예정)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차 개별 통지 후, 이의사항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
- 미흡이하 시설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수련시설의 전반적 수준 제고

2.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시설** : 평가대상 기간(2025년~2026년) 중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평가대상 시설의 범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8조)**

- ①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실시 연도 이전 2년으로 한다.
- ②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지기간을 제외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수련시설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폐지된 수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폐지가 진행 중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실시 기간 중 휴지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휴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경우 당해 연도 또는 다음 년도에 평가한다.
- ⑤ 평가대상 기간 또는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를 받고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휴업한 시설로서 관련 사실을 입증한 시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평가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평가대상 기간** : '25. 1. 1 ~ '26. 12. 31(평가 시행 연도 이전 2년간)

* '25년도에 등록된 시설은 등록시점부터 '26.12.31까지 운영실적 평가(1년 이상 경과한 시설)

○ **평가영역** : 운영 및 관리, 청소년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대외협력 및 홍보, 시설운영 발전의 총 7개 평가영역

○ **평가방법** :

- 수행기관이 주관하고 청소년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지표, 평가대상시설, 평가등급 심의·확정 기구인 평가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청소년수련 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6조)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서면평가: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은 평가편람에 수록된 지침과 기준 등을 참고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제출(근거자료가 많은 것은 리스트만 작성 후 현장에서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현장방문평가: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의 사실 여부 확인과 서면평가 자료에 대한 근거서류 및 현장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준비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보충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직원에 대한 면접 수행

- 현장방문평가 절차: ① 시설대표자 및 운영대표자 면담, ② 시설현황 브리핑, ③ 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

○ **평가등급** : 시설별 총 점수 기준으로 4단계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부여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100점 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미만

○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

- 관련 규정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유예 가능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
 -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1항 해당 사고(건) 발생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처벌(분)을 받은 경우
 -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과태료) 처벌(분)을 받은 경우
 -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 기준 〉

구 분	기 준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20조의2 제1항 사고(건)발생	10점 감점 또는 등급 조정
② 청소년활동진흥법70조(벌칙)	유죄 확정시 등급 조정
③ 청소년활동진흥법72조(과태료)	1건당 1점 감점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 조정
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급 조정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1항 해당 사고(건)의 범위

-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등 11개 행위)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처벌(분)을 받은 경우

-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수련지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참가인원 일정규모 이상, 위험도 높은 수련활동의 인증)
2.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과태료) 처벌(분)을 받은 경우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감독)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3. 13.>

1.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안전교육)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의3.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보험 가입)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최하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최하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등급을 하향 조정
- * 1개 분야 부적합 : 1개 등급 하향 조정 /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2개 등급 하향 조정
- * 1차 종합안전위생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수련시설 종합평가 종료이전(~'24. 11월에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점검기관에 재점검을 요청하여 개선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분야를 '적합'으로 인정
- *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 중 개선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시설 종합평가 종료 이전에 개선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분야 점검기관에서 재점검을 통하여 개선이 확인('26년 1월 ~ 6월)된 경우 등급 조정 가능

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 시설에 지적사항 개선 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미이행시 시정명령

○ 평가거부 시설(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성평등가족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 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독 실시
 - *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성평등가족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연 2회 이상)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 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지적사항 개선 추진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미흡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컨설팅

○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성평등가족부)

- 최우수시설 : 평가결과 우수 등급 시설 중 평가심의위원회 선정, 인증 표식 게시(2년간)
- 포상대상시설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
 -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시설 중에서 선정(시설유형 고려)

3. 평가단계와 절차

평가준비 단계	사업설명회 개최	202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 설명회 개최
	↓		
평가실시 단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2027.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		
	서면평가 실시	2027.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심사
	↓		
	현장평가 실시	202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7.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종합안전점검 결과 반영 및 평가결과 공개	2027.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반영 ■ 평가결과 공개 	
↓			
후속조치	평가결과 조치	202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시설 현판 제작 및 발송 ■ 우수시설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 시설별 법적 위반사항 정리
	↓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 II 장 202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지표

1. 2027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7개 영역 - 11개 항목 - 29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표 II-1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지표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1. 운영 및 관리 (11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4	2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5	1	5	●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4	2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4점)	2.1 청소년 이용	7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8	4	●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6	3	
	2.2 청소년 참여도	7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	0.8	4	●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0.6	3	
3. 청소년 활동 프 로 그 램 (20점)	3.1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4	3.1.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5	0.8	4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16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5	0.8	4	
			3.2.2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5	0.8	4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3.2.3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5	0.8	4	
			3.2.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5	0.8	4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5	0.8	4	
			4.1.2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5	0.8	4	●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5	0.8	4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5	0.6	3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등 확인 여부	5	0.4	2	●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0.8	3	●
5. 시설기준 및 안전 (20점)	5.1 시설기준 및 안전	20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5	0.6	3	●
			5.1.2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8	4	
			5.1.3 이용자 안전관리	5	0.6	3	●
			5.1.4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0.6	3	●
			5.1.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6	3	●
			5.1.6 프로그램 및 시설 안전관리	5	0.8	4	
6. 대외협력 및 홍보 (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참여정도	5	0.6	3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5	0.4	2	
7. 종합평가 (10점)	7.1 종합평가	10	7.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 선조치 이행 여부	5	1.0	5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 2022년부터 2026년)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6 = 평균 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정량·정성)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정책과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목표와 연계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3): 분야별 추진계획이라 함은 조직, 프로그램, 안전, 재난대책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의미함.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수련관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26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26년 12월로 종료되어 202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분원 형태의 시설의 경우 본원 시설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해당 분원의 중장기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계획의 승인, 예산반영 부분을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것
평가자료	(중·장기)발전계획서, 수탁계획서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청소년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2026년 연간 운영계획서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 (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5	4	3	2	1
	연도별 평균 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A) 점					(B) 점				
$\text{총점} (25\text{년 평균 점수} (A) + 26\text{년 평균 점수} (B)) / 2$ $= 2\text{년간 평균 점수} () \text{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지원 및 청소년활동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건의사항 공문서로 만든 자료 비교 확인 - 청소년 만족도, 욕구조사 반영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계획이 아닌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p>*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p>											

	<p>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p> <p>-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p> <p>※ 2025년과 2026년 계획서를 별도로 평가함</p>
평가자료	연간(2025, 2026)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서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현장방문 평가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5개 항목 모두 준수
	우수(4)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3개 준수
	보통(3)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2개 준수
	미흡(2)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1개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 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X로 판단	
	요소항목	
	O, X 여부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시설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공식명칭(예: 관장, 센터장 등)을 사용하고 있다.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수탁법인의 대표(예: 재단 이사장)가 결재하는 경우에는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예: 인사, 예산의 경우에 위임전결에서 예외로 함) <p>[참고사항] 성평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평가요소 1)번 관련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 ~실·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 ~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p>○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p>○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p>☞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p>☞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p>평가자료</p>	<p>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관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p>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규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만족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3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수련관 명의를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td> <td></td> </tr> <tr> <td>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td> <td></td> </tr> <tr> <td>3)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td> <td></td> </tr> <tr> <td>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수립, 적용되고 있다.</td> <td></td> </tr> <tr> <td>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관 명의를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		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3)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수립, 적용되고 있다.		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관 명의를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													
	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3)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수립, 적용되고 있다.													
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 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의 제정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정 범위 및 평가요소별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회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평가요소 2)의 경우 관련 자체적인 규정 관련 위원회 등(이사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요소 3)의 경우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 5종 이상의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경우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함 - 평가요소 5)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수련관은 제외(신고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 또는 위탁에 관계없이 청소년수련관별로 자체적인 명의로 고유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식적 절차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동일 재단 산하에 다수의 수련관, 문화의집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재단내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는 인정함. 													

	<p>1) 지자체 직영 및 지자체 공단/지자체 산하 운영법인(재단) 소속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이 직영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재단 등 법인 소속 시설인 경우, 관련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또는 재단 규정 등도 인정하여, 이 경우 평가요소'1) 수련관 명칭의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도 인정함. - 평가요소 3)의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실제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적이거나 독자적인 사무편람, 운영매뉴얼 등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4)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후 실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인정 <p>2) 위탁시설/(청소년단체 위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의 규정에 청소년수련관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이 규정화된 경우 인정(내용과 관리 체계를 평가) - 수탁한 수련시설 자체의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 불인정 <p>※ 위·수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규정(정관 성격의 규정을 말함) 제개정 시 시설 자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한 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추천</p> <p>•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p> <p>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p>평가자료</p>	<p>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집,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등</p>

평가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용자 수의 이용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수영장 없는 시설	수영장 있는 시설
	매우우수(5)	80% 이상	70% 이상
	우수(4)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보통(3)	6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미흡(2)	5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매우미흡(1)	50% 미만	40% 미만
평가요소	$\frac{2025년\sim 2026년\ \text{연간}\ \text{청소년}\ \text{이용자}\ \text{수}\ (\quad)\ \text{명}}{2025년\sim 2026년\ \text{연간}\ \text{전체}\ \text{이용자}\ \text{수}\ (\quad)\ \text{명}} \times 100 = [\quad\%]$ <p>※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율'과 다름에 주의 필요</p>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이용의 형태 중 건물을 포함하여 물리적인 '시설' 공간의 이용과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함) <p>[참고사항] 이용자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p> <p>1) 이용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용자 수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청소년 수는 이용자에게 포함하되, 그 가족 수는 연간 전체 이용자 수에서 제외함. - 청소년 이용자 수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인원수 범위 : 연인원 적용(동일인이 다수 활동이나 시설 이용 시 중복 계산) - 유형별 범위 : 일반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시설 이용(상호중복은 제외) 포함 - 공간의 범위 :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함 - 주체별 범위 : 수련관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p>2) 이용자 수 포함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외부에서 진행된 캠프, 국제/지역간 교류활동,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활동 프로그램 참가인원을 포함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별 출석인원을 합산함
-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실시된 청소년여울림 마당 등 관련 사업의 참여 인원 포함
- 청소년수련관 내 독서실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독서실이 청소년수련관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포함하되, 향후 학습형 독서실 운영은 청소년수련관 고유기능과 맞지 않음을 설명하고 변경을 권고함
- ※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방과후아카데미 출석부 등록자료 필히 확인

3) 이용자 수 제외 대상

- 수련관 내에 입주한 타 기관 이용자는 제외(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 축제, 전시, 공연 등 행사 프로그램의 단순 관람객은 제외(실 인원 산출 문제 등 고려)
-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개인의 임의적 이용은 제외(식당 등 편의시설, 야외공간 등)
-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시청 조회수)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해당 게시물 좋아요 수)의 이용자수는 이용률의 이용자 수에서 제외

4) 기타사항

- 수련원형 수련관 :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함
- * 숙박이용 : 숙박일이 아닌 일별 이용자 수 산정(2박 3일의 경우는 3일 X 숙박인원으로 계산)
- * 일반이용 :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 활동으로 이용한 경우 이용자 수 산정

※ 주의 :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지표의 법 위반여부 판단 기준

-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율'과 다름에 유의
- 법 위반은 연간 전체 이용 인원 대비 청소년 외의 연간 이용자가수가 40%를 초과할 경우(청소년 이용자 수가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안·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 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가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 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 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평가자료

시설이용현황대장,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수용정원과 대비하여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의 시설이용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 80%이상
	우 수(4) : 70%이상 ~ 80%미만
	보 통(3) : 60%이상 ~ 70%미만
	미 흡(2) : 50%이상 ~ 60%미만
	매우미흡(1) : 50%미만
평가요소	$\left\{ \frac{2025년 시설이용청소년수}{297일} + \frac{2026년 시설이용청소년수}{297일} \right\} / 2 \times 100 = [\quad]\%$ <p style="text-align: center;">수용정원()명</p>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관련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 : [지표 2.1.1]의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 기준 - 산출 인원 기준 : 연간 일별 평균 이용자 수 산출(365일에서 관공서 공휴일 수 차감, 2025년 68일, 2026년 68일 각각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식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시설 공사 등)로 장기간 휴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차감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별 평균이용인원 산출 • 수용정원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정원 기준 : 1회에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공식적 등록 자료 활용 - 평가기간 내 수용정원 변경 시 평균값 적용(소수점 2자리 반올림) - 수용정원은 동시 이용 가능 인원으로 이용자 수에 따라 일별 평균 이용 인원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시설 공간 이용의 회전율에 차이) - 지자체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등록시 산정한 수용정원이 현재의 시설 공간 구조 및 운영체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식적인 수용정원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로 이를 기준으로 함 <p>※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수용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필요</p> <p>※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농산어촌 지역이나 5년단위로 지정되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 수용정원 대비 지역청소년의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평정기준의 2등급 범위 내에서 가점 반영 가능함.(행정안전부에서 지정 인구감소지역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p>
평가자료	이용현황관리대장,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평가항목	2.2 청소년 참여도	
평가지표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관 운영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7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6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3개 이하 만족 혹은 운영위원회 없음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월 1회 이상 연간 10회 이상 회의를 운영하였다.	
	3) 회의 참석률이 연평균 50% 이상이다.	
	4) 수련관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5)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제안한 실적이 있다.	
	6)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다.	
7) 수련관장과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 운영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임 - 개별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단순한 자치회 조직이 아닌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의 적극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p>※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의사결정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는 형태 불가</p> <p>- 수련시설 사업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였을 경우 평정기준 '미흡' 처리</p> <p>[참고사항]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 수련관의 제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모니터링 -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에 관한 사항 	

	<p>-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의 구성·활동과 관련된 실행계획서의 작성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관련 계획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회의운영 : 공식적으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실적을 확인(임원회의는 제외) - 회의참석 : 연간 개최된 모든 전체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의 평균 출석률 - 모니터링 :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된 계획 및 결과 자료를 토대로 확인 - 의견반영 : 내부결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협의-반영된 경우를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제안은 내용에 따라 제외하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제안은 내용의 수준에 따라 인정 ●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과 실적을 평가함 -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실적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함(동아리 실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아리 활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해야 함(예산, 자체 활동 등) ※ 회의중심 평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적용 인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및 연간운영계획,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실적(회의록 등), 운영위원회 의견반영 자료 문서(결재)

평가항목	2.2 청소년참여도	
평가지표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스스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1) 동아리 운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O . X 여부
	2) 동아리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 실적이 있다.	
	3) 시설 내 동아리연합회가 구성·운영되어 있거나 동아리 연합 활동 실적이 있다.	
	4) 동아리별 활동계획 및 일지 등이 관리되고 있다.	
5) 동아리 관련 대외·교류활동 참가 또는 공모사업 신청 실적이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 수준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통합하여 평가함 -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 및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핵심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함 • 인정대상 동아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관의 자체 소속 동아리로 신청 및 가입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함 - 외부(타 단체, 학교 소속 동아리 등)의 등록 및 단순한 시설 대관은 제외함 - 기타 수련관 내 입주 타 기관에서 조직한 동아리는 제외함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 지원 계획 : 연간 단위의 전체 동아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동아리 활동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인정 범위 : 수련관 자체 및 외부 지원 등 총 비용 기준 - 자율적 운영체제 인정 범위 : 자체 모집, 선·후배 연계, 자율적인 모임, 활동 관리, 운영규정, 연합회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동아리별 운영 결과 자료 및 인터뷰로 판단)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 수준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통합하여 평가함 -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 및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핵심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함 	
	<p>• 인정대상 동아리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관의 자체 소속 동아리로 신청 및 가입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함 - 외부(타 단체, 학교 소속 동아리 등)의 등록 및 단순한 시설 대관은 제외함 - 기타 수련관 내 입주 타 기관에서 조직한 동아리는 제외함 	
	<p>• 평가요소별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 지원 계획 : 연간 단위의 전체 동아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동아리 활동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인정 범위 : 수련관 자체 및 외부 지원 등 총 비용 기준 - 자율적 운영체제 인정 범위 : 자체 모집, 선·후배 연계, 자율적인 모임, 활동 관리, 운영규정, 연합회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동아리별 운영 결과 자료 및 인터뷰로 판단) 	
평가자료	청소년동아리 운영규정 및 연간운영계획, 청소년동아리현황(청소년동아리 심의결과), 청소년동아리활동 실적 보고 자료, 청소년동아리별 활동계획 및 일지	

평가항목	3.1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평가지표	3.1.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5점 이상					
	우 수(4)	3.5점 이상 ~ 4.5점 미만					
	보 통(3)	2.5점 이상 ~ 3.5점 미만					
	미 흡(2)	1.5점 이상 ~ 2.5점 미만					
	매우미흡(1)	1.5점 미만					
평가요소	요사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프로그램이 있다.		5	1			
	2)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신규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4) 프로그램 평가계획이 체계적이다.		5	4	3	2	1
5)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구체적이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유형별 고유 기능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2년간 진행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활동을 확인함 • 프로그램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1개 이상의 신규 프로그램 - 평가대상 프로그램: 연간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계획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함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수와 내용에 따라 평가 2) 개인이 혼자 개발한 프로그램과 팀이나 워크숍 등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 3) 만족도조사, 의견조사, 면접조사 등의 여부를 통하여 판단 4)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 - 평가대상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서의 체계성: 계획서로서의 구성 요건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정 2) 환류체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는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 프로그램이 있으면 5점, 없으면 1점 부여 - 프로그램 운영 실적: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 실적이 있으면 5점, 없으면 1점 부여
<p>평가자료</p>	<p>2025, 2026년도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회의 또는 워크숍 진행 실적,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개발관련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2025, 2026년 프로그램 평가계획서, 2025, 2026년 프로그램 평가결과 및 실적보고서 등</p>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고유한 기능으로서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90점 이상			
	우 수(4)	80점 이상 ~ 90점 미만			
	보 통(3)	70점 이상 ~ 80점 미만			
	미 흡(2)	60점 이상 ~ 70점 미만			
	매우미흡(1)	60점 미만			
평가요소	프로그램 유형	사업량 산정 기준	사업수	가중치	점수
	일회성 프로그램	1회 운영		× 0.5	점
	정기 프로그램	2~4회 운영		× 2	점
		5~7회 운영		× 3	점
		8~10회 운영		× 4	점
		11회 이상		× 5	점
	행사 프로그램 (축제, 전시, 캠프 등)	1일 운영		× 2	점
2일 이상 운영			× 3	점	
		총점(A)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현황을 평가 - 일회성의 단시간 활동보다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 정기형 프로그램의 횟수는 실제 참가자들이 모여서 활동을 진행한 횟수를 의미함 • 평가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의 목표, 취지, 방향에 부합되는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단위 활동/매뉴얼이 아닌 사업계획서에 편성되어 실행된 사업(프로젝트)을 의미함 -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계획과 과정, 절차에 따라 운영된 경우 비 예산 사업도 인정 - 청소년수련관 내부 또는 외부의 장소에 관계없이 수련관에서 주관한 프로그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인정 범위(*개별적 계획서를 작성-실행한 사업의 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프로그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회 활동 - 정기 프로그램 :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활동 - 행사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관 주최·주관으로 운영한 축제, 전시, 캠프 등 - 방과후아카데미를 정기프로그램으로 인정 - 동아리 전체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1개의 정기프로그램으로 인정 - A프로그램을 25년에 운영하고, 26년에도 운영한 경우는 2개로 인정 • 제외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내 타 기관 사업(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 학교에서 단순히 시설을 대관한 경우만 제외 •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지역적 특징(도서산간지역 등)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 수(인구소멸지역 등)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평정기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음. 				
평가자료	2025, 2026년 청소년활동 사업(프로그램 현황) 현황, 2025, 2026년 결과보고서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2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수련활동을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개 이상
	우 수(4)	3개
	보 통(3)	2개
	미 흡(2)	1개
	매우미흡(1)	0개
평가요소	•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운영 실적이 확인된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를 평가함 • 평가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함 - 인증받은 프로그램 중에서 2년간 운영한 총 프로그램 수를 평가함. - 동일 인증프로그램을 2년간 10회 실시하였더라도 1개로 인정 - 인증받은 후 실제 실시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음. - 인증활동 운영 실적은 e-청소년에 등재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p>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p> <p>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라.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평가자료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보고서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3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고유한 기능인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30%이상
	우 수(4)	25%이상 ~ 30%미만
	보 통(3)	20%이상 ~ 25%미만
	미 흡(2)	15%이상 ~ 20%미만
	매우미흡(1)	15%미만
평가요소	$\frac{\text{청소년활동사업비 ()천원}}{\text{전체사업비 ()천원}}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활동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원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표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의 비중을 평가함 • 산정 범위 : 2025, 2026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사업비 : [지표 3.2.1]의 사업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관련 지출액을 의미함. - 전체사업비 : 연도별 결산서 기준, 포함된 모든 예산규모(인건비, 경상비 포함)를 의미함. * 지자체 설립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복합시설인 경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지출되는 모든 경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함. 	
평가자료	2025, 2026년 예산서 및 결산서, 2025, 2026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사업별 예산 지출 관련 자료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점					
	우수(4)	4점 이상 ~ 5점 미만					
	보통(3)	3점 이상 ~ 4점 미만					
	미흡(2)	2점 이상 ~ 3점 미만					
	매우미흡(1)	2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5	4	3	2	1
	2) 청소년의 활동참여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도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5	4	3	2	1
	4) 프로그램 예산 등 자원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5	4	3	2	1
	5) 청소년활동의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 실시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평가에 한계가 있어 각 시설에서 수행한 사업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평가를 실시함 • 평가의 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3.2.1]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함 - 각 시설에서 제출한 2025, 2026년도별 대표적으로 제시한 3개 프로그램(총 6개) 중 평가위원이 각각 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은 평가요소별로 평가 후 합의하여 최종 평정을 실시함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과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함 - 청소년 활동참여성과 기록, 관리 :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참여 후 청소년들의 변화, 그리고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추후관리 등을 기록, 관리 						
평가자료	2025, 2026년 동안 시행되어 완료된 사업(프로그램) 각 3종						

평가항목	4.1 직원 확보율												
평가지표	4.1.1 직원 확보의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 이상											
	우 수(4)	4% 이상~ 5% 미만											
	보 통(3)	3% 이상~ 4% 미만											
	미 흡(2)	2% 이상~ 3% 미만											
	매우미흡(1)	2% 미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A) 전체 직원 확보율 $\frac{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수용정원()명} \times 100 = []\ %$												
	(B) 정규직원 확보율 $\frac{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정규\ 직원수()명}{수용정원()} \times 100 = []\ %$												
$(A)확보율 + (B)확보율 / 2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정규직원 + 비정규직원(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보험종류</th> <th style="width: 60%;">내 용</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 </tr> <tr> <td>건강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고용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범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 계약직 포함)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는 정규직에 포함 * 공무원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구분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정규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제외함 * 정규직원 중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미확보한 경우는 육아휴직자는 정규직원 수와 전체직원 수에 미포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p>합하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정규직원 수, 전체직원 수에 각 1명으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월의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중간 퇴직자)는 당월 직원 인력으로 인정 * 동일 재단 내 파견근무자의 경우 해당 시설에 상근하며 특정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 수행시 정규직으로 인정하되, 다른 기관의 업무 겸직할 경우(재단내 다른 업무 겸직)는 정규직에서 제외, <p>- 정규직원 제외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2년 이하 모두)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직원을 말함. * 수련원 내 간접 계약직원(위생, 식당, 시설관리 등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수련관 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은 직원 범위에서 제외(위탁 재단의 관리직원 등) * 계약이 해지되어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근무사실 확인은 기존 근무계약서나 기 지급한 급여표 등을 통해 확인. * 시설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시설 내부 부서로 운영할 경우에도 제외(인건비 채용 기준, 단 수련관 인건비에 의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수련관 직원에 포함) <p>- 수용정원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정원 기준 : 1회에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공식적 등록 자료 활용 * 평가기간 내 수용정원 변경 시 평균값 적용(소수점 2자리 반올림) <p>※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수용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필요</p>
평가자료	연간 직원명단,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명세서 및 4대 보험 지급 관련 자료

평가항목	4.1 직원 확보율																									
평가지표	4.1.2 수용정원 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청소년지도사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요소 산출 결과 2.5% 이상																								
	우 수(4)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요소 산출 결과 1.5% 초과 ~ 2.5% 미만																								
	보 통(3)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매우미흡(0)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치 산출(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frac{2025년1월1일 \sim 2026년12월31일 \text{ 월평균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수 ()명}}{\text{수용정원 ()명}}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사람 기준)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직원 중 계약직 직원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 미소지자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지도사의 경우 다수의 채용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인구감소지역, 도서산간지역 등)에 의해 채용이 불가하여 2급을 채용한 경우는 평정기준을 유지하되, 종합평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적 차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p>[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원기준 (수용정원)</th> <th>기본최소인원</th> <th>추가최소인원</th> <th>배치기준 (최소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명~500명</td> <td>1급 1인 이상 2급 1인 이상 3급 2인 이상</td> <td>-</td> <td>4인 이상 (급별 기준)</td> </tr> <tr> <td>501명~749명</td> <td>상동</td> <td>-</td> <td>상동</td> </tr> <tr> <td>750명~999명</td> <td>상동</td> <td>1인 이상</td> <td>5인 이상</td> </tr> <tr> <td>1,000명~1,249명</td> <td>상동</td> <td>2인 이상</td> <td>6인 이상</td> </tr> <tr> <td>1,250명~1,499명</td> <td>상동</td> <td>3인 이상</td> <td>7인 이상</td> </tr> </tbody> </table>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1급 1인 이상 2급 1인 이상 3급 2인 이상	-	4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	상동	750명~999명	상동	1인 이상	5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2인 이상	6인 이상	1,250명~1,499명	상동	3인 이상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1급 1인 이상 2급 1인 이상 3급 2인 이상	-	4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	상동																							
750명~999명	상동	1인 이상	5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2인 이상	6인 이상																							
1,250명~1,499명	상동	3인 이상	7인 이상																							

※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수용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필요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평가자료

직원명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자격취득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출력), 급여명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5)</td> <td>30시간 이상</td> </tr> <tr> <td>우 수(4)</td> <td>2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td> </tr> <tr> <td>보 통(3)</td> <td>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td> </tr> <tr> <td>미 흡(2)</td> <td>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td> </tr> <tr> <td>매우미흡(1)</td> <td>15시간 미만</td> </tr> </table>	매우우수(5)	30시간 이상	우 수(4)	2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보 통(3)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미 흡(2)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매우미흡(1)	15시간 미만
매우우수(5)	30시간 이상										
우 수(4)	2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보 통(3)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미 흡(2)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매우미흡(1)	15시간 미만										
평가요소	$\frac{\text{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전체 직원 직무연수 총 참여시간 ()시간}}{\text{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전체 직원 수 ()명}} = [\quad]\text{시간}$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전문성 개발도 필요함 직무연수 대상 전체 직원 범위 : 4.1.1의 전체 직원 범위에서 미화, 경비, 운전, 조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직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직원 : 정규직원 + 비정규직원(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으로 이에는 청소년지도사 외에도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직원 등도 포함되며, 회계직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참여시간도 포함됨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및 외부 직무연수 모두 포함 내부연수 : 외부강사 초청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을 말함 외부연수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직무연수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명칭 및 목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무연수를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경우는 직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이수시간의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은 직무연수 참여시간 기준은 1일 8시간, 반일 4시간으로 함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원격통신교육, 사이버교육 포함)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 해외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간 퇴사자의 교육연수 참여시간 포함 자격인정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자격 급수 향상에 따른 자격 연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인정 -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관련 기안문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학습, 관련 유튜브 지정 채널 등)의 학습시간은 50% 인정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해당 직종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진행되는 전체 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예: 성폭력예방교육 등)은 제외 - 수련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회의는 제외 - 평가지표 4.2.4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수는 제외 - 직무연수를 목표로 하지 않은 여행 또는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 정책토론회 형태로 운영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의 참가 또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사업) 설명회 참가는 제외 - 출산 및 육아휴가로 인해 장기간(1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대상에서 제외
평가자료	연간 직원 직무연수계획, 출장명령서, 내부기안, 수료증, 연수시간 등 관련 문서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직원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12개 이상 시행	
	우 수(4)	평가요소 중 9~11개 시행	
	보 통(3)	평가요소 중 7~8개 시행	
	미 흡(2)	평가요소 중 5~6개 시행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4개 이하 시행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정기적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하고 있다.	
		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6)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 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8)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9)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11) 직원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3)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정규직 및 계약직원, 배치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PM/SM) 그 가족의 복리후생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자체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를 말하며, 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그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인정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3)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우수직원 국내외연수 및 포상금 등) 		

	<p>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부교육연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p> <p>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p> <p>6) 초과근무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p> <p>7) 직원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p> <p>8) 상여금 및 성과급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 연봉제의 경우에 관련 증빙 확인 시 인정</p> <p>9) 가족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p> <p>10)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중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어느 하나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p> <p>11) 사내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2회 이상 실시되고 있을 때 인정 * 청소년재단 동호회 등도 인정</p> <p>• 제외대상 : 청소년수련관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p>
평가자료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관련문서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등 확인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평정기준	매우우수(5)	성범죄 경력 모두 확인
	매우미흡(0)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요소	● 전체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임.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 공적 문서 모두 인정) 유무에 대해서 현장 방문시 확인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시설에 상사로 출입하는 모든 성인의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경력 확인은 법적 의무사항임. -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 미흡 '0'점 평정 <p style="color: blue;">- 직원 대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한 경우 전반적 발전 노력 수준 지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2029년부터는 별도 평가요소로 추가 예정)</p> <p>● 직원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2025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수련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일용직, 강사, 시설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종사자의 경우도 포함)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p>●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함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p> <p>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p> <p>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p>	

	<p>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5. 4. 11.></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p> <p>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p> <p>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p> <p>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p>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사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p> <p>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5. 4. 11.></p> <p>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p> <p>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평가자료	<p>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p>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개 교육 모두 실시																				
	매우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실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요소항목</th> <th colspan="2">교육실시 유무 (○, ×)</th> </tr> <tr> <th>2025년</th> <th>2026년</th> </tr> </thead> <tbody> <tr> <td>1) 성희롱예방교육</td> <td></td> <td></td> </tr> <tr> <td>2) 개인정보보호법교육</td> <td></td> <td></td> </tr> <tr> <td>3) 산업안전보건교육</td> <td></td> <td></td> </tr> <tr> <td>4) 장애인인식개선교육</td> <td></td> <td></td> </tr> <tr> <td>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교육실시 유무 (○, ×)		2025년	2026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요소항목	교육실시 유무 (○, ×)																					
	2025년	2026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어느 한 해라도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로 평가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교육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평가요소 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제외(실시로 인정) - 식당 등 하청업체의 직원이 시설에 상주할 경우, 해당 직원의 교육은 하청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제시된 5개 의무교육 이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각종 의무교육(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한 경우 평가지표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관련 가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의무교육 제외범위

- 안전 분야별(전기, 가스 등)로 직원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제시된 5개 이외의 특정 직무 및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수강은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
- 청소년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화·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성)으로 구성된 사업
-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p>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p> <p>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 <p>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p> <p>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방문 평가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모두 준수																																				
	매우미흡(0)	평가요소 중 1개라도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요소항목</th> <th>O . X 여부</th> </tr> <tr> <th>구분</th> <th>기준</th> <th></th> </tr> </thead> <tbody> <tr> <td>1) 면적</td> <td>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td> <td></td> </tr> <tr> <td>2) 실내집회장</td> <td>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td> <td></td> </tr> <tr> <td>3) 체육활동장</td> <td>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4) 자치활동실</td> <td>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5) 특성화수련활동장</td> <td>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6) 상담실</td> <td>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7) 휴게실</td> <td>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8) 위생시설</td> <td>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9) 지도자실</td> <td>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10) 기타설비</td> <td>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구분	기준		1) 면적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실내집회장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체육활동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치활동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담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타설비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요소항목		O . X 여부																																			
	구분	기준																																				
	1) 면적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실내집회장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체육활동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치활동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담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타설비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된 시설의 내역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확인과 시설 내 활동환경을 시찰·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 평가자료 검토 후, 현재 시설의 공간 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평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p>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활동수련장 기준[별표 3] 																																					

<p>5) 특성화 수련 활동장</p>	<p>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나)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다) 봉사과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형 연계 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신체의 강건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바)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 등),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사)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p>
평가자료	시설 허가서류, 시설 총별 평면도, 현장 방문시찰,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허가 사항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2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 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과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6개 항목 이상 해당
	우 수(4)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해당
	보 통(3)	평가요소 중 4개 항목 해당
	미 흡(2)	평가요소 중 3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와 재난대응계획 모두 미수립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였다.	
	4)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5)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6)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7) 재난대응계획서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시설물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 단순 소방계획서만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로 간주할 수 없음. - 재난대응계획서는 재난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립하는 것을 적극 권장 (29년 평가부터 별도 평가항목 구성 예정)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대상은 생활관, 체육시설, 실·내외 집회장, 식당,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는 안전관리 대상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 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시설의 특성 및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재난대응 계획서 등 현장실사 기준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3. 이용자 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에 참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미흡(0)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td> <td></td> </tr> <tr> <td>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td> <td></td> </tr> <tr> <td>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제반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가 현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평가자료

프로그램 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1년간 12회)
	3점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일부 보고
	1점	자체 안전점검 일부 실시와 지자체 미보고
평가요소	평가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한 후 위의 평정기준을 적용함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자체안전점검 및 지자체보고 관련 문서(평가자료)를 확인하고 평정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자체 청소년수련관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여부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신규 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등록 이후 안전점검 실적으로 평가 <p>※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 자체적인 내부결재를 진행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청소년활동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1일 ~ 2027년 현장방문 평가시까지 	
평정기준	5점	2025년부터 2027년 방문평가시 현재까지 3개년도 모두 보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
	2점	2024년부터 2026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기존 기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함.
	0점	2024년부터 2026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일시라도 시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가입 기준에도 미달
평가요소	평가기간 내 각 년도(2025~2026년) 및 2027년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3개년 모두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확보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 평정함.(다만, 타 보험의 경우에도 평가요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평가요사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23.8.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인 경우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 1억5천만원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할 경우 0점 처리)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담보내역별 보상한도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상 1사고당 총보상 한도액이 빈칸이거나 무제한 또는 숫자로 9999999999 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면 총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으로 시설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안전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p>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평가자료	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등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6 프로그램 및 시설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시설 운영대표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2) 시설 직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프로그램 활동공간이 안전하다		5	4	3	2	1
	4) 안전을 위협할만한 시설의 위험요소가 없다		5	4	3	2	1
	5)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프로그램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성 여부 - 수련관 내 시설 위험요소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5점, 그렇지 않은 경우 1점 부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p>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p> <p>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평가자료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평가항목	6.1 대외협력 및 홍보					
평가지표	6.1.1 대외협력 및 참여정도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타 기관 및 시설·단체, 교육청 및 학교와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등에서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대외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2) 연계대상 및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4	3	2	1
	4)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4	3	2	1
	5)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현장실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평가위원의 자료 확인을 통하여 실적을 인정한 후 정성평가.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범위 : 전국 - 업무협력을 위한 시설 자체의 방향, 노력과 실적 수준 - 시설 간 연계 협력은 단순 업무 협조가 아닌 공동사업 추진 등을 말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지역연계 기관 및 학교의 범위는 공식적인 협력 사업을 1회 이상 운영한 기관 - 공식적인 협력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공동주관 및 운영,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지원이나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요소 5)의 경우 평가위원이 해당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농산어촌지역 등 현장실습 참여 자체가 어려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음.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제휴 계약 등 협력관계의 지속성, 충실성 수준(MOU 외 이에 준하는 공식적 협력 체제를 갖춘 경우 인정-문서화 전제) - 사업 중심의 실제적인 협력 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책과 협력 내용(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내용의 협력 수준)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관에 대한 단순 대관은 제외함 <p>※ 위탁운영법인의 연계협력 실적은 제외, 단 시설 명칭이 기재되어 함께 참여 진행 시 인정</p>					
평가자료	지역사회 연계협력계획서, 협력제휴 증명자료, 기타 협력을 위한 실적 자료					

평가항목	6.1 대외협력 및 홍보					
평가지표	6.1.2 홍보활동의 노력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내 인지도 확보, 이용의 활성화,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균점수 5점				
	우수(4)	평균점수 4점 이상 ~ 5점 미만				
	보통(3)	평균점수 3점 이상 ~ 4점 미만				
	미흡(2)	평균점수 2점 이상 ~ 3점 미만				
	매우미흡(1)	평균점수 2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5	4	3	2	1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홍보대상별 홍보방법은 적합하다.	5	4	3	2	1
	4) 청소년활동에 대한 모집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5	4	3	2	1
	5) 청소년활동 성과중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평가요소를 확인하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소 수를 산출하여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1)홍보계획의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평가요소 2)홍보대상 : 지역 내 청소년 현황,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청소년수련관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평가요소 3) 홍보방법(사례) : 청소년홍보 동아리 모임 운영(기자단, 홍보 대사 등), 인터넷, SNS, 팸플릿, 현수막,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보도자료가 기사화 된 것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출한 실적도 포함 - 평가요소 4)청소년활동 모집 홍보 : 행사안내 및 참가자 중심의 홍보(SNS, 전단지,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 중심으로 평가) - 평가요소 5) 성과중심 홍보 : 홍보내용이 행사안내 및 참가자 모집, 단순 사실 중심이 아닌 청소년활동의 주요 성과나 프로그램 효과 등을 알리는 홍보(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적, 참여 후 긍정적 변화 등)를 의미함.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평가항목	7.1 종합평가	
평가지표	7.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평가방향	평가대상 시설은 이전에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법적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현장방문 평가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이행
	보 통(3)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부분 이행
	미 흡(0)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미이행
평가요소	•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여부로 판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기존에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과 개선 조치한 내용을 비교하여 평정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사항 중 권고사항은 제외하고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평정함. - 이전 평가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었던 시설과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매우우수(5)로 평정 	
평가자료	시설별 평가결과보고서, 개선조치 한 지표 입증 자료	

평가항목	7.1 종합평가		
평가지표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준		
평정기준		2025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2026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매우우수(2.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 수(2)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 통(1.5)	보통임	보통임
	미 흡(1)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매우미흡(0.5)	법 관련 10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법 관련 10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2025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점수 + 2026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점수 = 총점 () 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 법 관련 지표별 평가결과(법 기준을 위반한 지표 수)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철학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지표 10개 중 평점 결과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를 확인 후 평가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가산점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개 이상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가점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 - 청소년수련관 내 정해진 사업 외에 개별청소년의 자유로운 이용/활동, 자발적인 문화체험과 만남과 소통이 가능한 자율적 문화 공간(인터넷부스, 북카페, 노래방, 게임방, 영화방, 포켓볼 등과 같은 공간으로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신청하고 활용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신고여부 평가 -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 평가 - 기타 발전노력과 관련된 사항(관련 실적 자료 확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수행 시 가산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증진을 위해 기관차원의 지원 실적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정부 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2. 2027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7개 영역 - 11개 부문 - 30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1. 운영 및 관리 (10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4	2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체계	6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5	0.8	4	●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4	2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점)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6	3	●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6	3	
			2.1.3 청소년 자율적 문화 공간 이용률	5	0.6	3	
	2.2 청소년 참여도	7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	0.8	4	●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0.6	3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3.1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4	3.1.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5	0.8	4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의 운영	16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5	0.8	4	
			3.2.2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5	0.8	4	
			3.2.3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5	0.8	4	
			3.2.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5	0.8	4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5	0.8	4	
			4.1.2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 수	5	0.8	4	●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5	0.6	4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5	0.6	3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등 확인 여부	5	0.4	2	●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0.8	3	●
5. 시설기준 및 안전 (19점)	5.1 시설기준 및 안전	19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5	0.6	3	●
			5.1.2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8	4	
			5.1.3 이용자 안전관리	5	0.6	3	●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5	0.6	3	●
			5.1.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6	3	●
			5.1.6 프로그램 및 시설안전 관리	5	0.6	3	
6. 대외협력 및 홍보 (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참여 정도	5	0.6	3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5	0.4	2	
7. 종합평가 (10점)	7.1 종합평가	10	7.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5	1.0	5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기관으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서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6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정량·정성)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정책과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목표와 연계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3): 분야별 추진계획이라 함은 조직, 프로그램, 안전, 재난대책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의미함.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문화의집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26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26년 12월로 종료되어 202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계획의 승인, 예산반영 부분을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것
<p>평가자료</p>	<p>(중·장기)발전계획서, 수탁계획서</p>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청소년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2026년 연간 운영계획서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5	4	3	2	1
	연도별 평균 점수	(A) 점			(B) 점						
총점 : (25년 평균 점수(A) + 26년 평균 점수(B)) / 2 = 2년간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지원 및 청소년활동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건의사항 공문서로 만든 자료 비교 확인 - 청소년 만족도, 욕구조사 반영 여부 확인 • 연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계획이 아닌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집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 2025년과 2026년 계획서를 별도로 평가함 										
평가자료	연간(2025, 2026)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서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현장 방문평가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5개 항목 모두 준수												
	우수(4)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3개 준수												
	보통(3)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2개 준수												
	미흡(2)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1개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2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td> <td></td> </tr> <tr> <td>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td> <td></td> </tr> <tr> <td>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td> <td></td> </tr> <tr> <td>4) 시설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공식 명칭(예: 원장, 관장, 센터장 등)을 사용하고 있다.</td> <td></td> </tr> <tr> <td>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시설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공식 명칭(예: 원장, 관장, 센터장 등)을 사용하고 있다.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시설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공식 명칭(예: 원장, 관장, 센터장 등)을 사용하고 있다.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 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수탁법인의 대표(예: 재단 이사장)가 결재하는 경우에는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예: 인사, 예산의 경우에 위임전결에서 예외로 함) 													

[참고사항] 성평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평가요소 1)번 관련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 ~살·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 ~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p>○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p>○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p>▣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p>▣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문화의집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규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만족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문화의집 명의를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	
	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3)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있다.	
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 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의 제정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 운영규정 범위 및 평가요소별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평가요소 2)의 경우 관련 위원회 등(이사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요소 3)의 경우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 5종 이상의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경우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회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평가요소 5)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청소년문화의집 제외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 또는 위탁에 관계없이 청소년문화의집별로 자체적인 명의로 고유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식적 절차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동일 재단 산하에 다수의 수련관, 문화의집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재단내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는 인정함. 	

	<p>1) 지자체 직영 및 지자체 공단/지자체 산하 운영법인(재단) 소속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이 직영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재단 등 법인 소속 시설인 경우, 관련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또는 재단 규정 등도 인정하여, 이 경우에 평가요소 1) 문화의집 명의를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도 인정함. - 평가요소 3)의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실제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적이거나 독자적인 사무편람, 운영매뉴얼 등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4)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후 실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인정 <p>2) 위탁시설/(청소년단체 위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의 규정에 청소년수련관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이 규정화된 경우 인정(내용과 관리 체계를 평가) - 수탁한 수련시설 자체의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 불인정 <p>※ 위·수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정관 성격의 규정을 말함)규정 제개정 시 시설 자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한 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p>평가자료</p>	<p>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집,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등</p>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용자의 이용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80% 이상
	우 수(4)	70% 이상 ~ 80% 미만
	보 통(3)	60% 이상 ~ 70% 미만
	미 흡(2)	50% 이상 ~ 60% 미만
	매우미흡(1)	50% 미만
평가요소	$\frac{2025년\sim 2026년\ 연\ 간\ 청\ 소\ 년\ 이\ 용\ 자\ 수\ (\quad)\ 명}{2025년\sim 2026년\ 연\ 간\ 전\ 체\ 이\ 용\ 자\ 수\ (\quad)\ 명}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내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시설 공간의 이용과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p>[참고사항] 이용자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p> <p>1) 이용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에서 제외함.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인원수 범위 : 연인원 적용(동일인이 다수 활동프로그램과 시설 이용 시 중복 계산) - 공간의 범위 :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함 - 주체별 범위 : 문화의집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p>2) 평가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집 내에 입주한 타 기관 이용자 제외(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 축제, 전시 등 행사 프로그램의 단순 관람객은 제외(실인원 산출 문제 등 고려) -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야외공간의 임의적 이용은 제외(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는 경우 인정) - 청소년문화의집 외부에서 진행된 캠프, 국제/지역간 교류활동,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활동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포함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별 출석인원을 합산함 - 청소년문화의집 내에서 실시된 청소년어울림 마당 등 관련 사업의 참여 인원 포함 <p>3)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 내 독서실 이용자 : 독서실이 청소년문화의집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포함하되, 향후 학습형 독서실 운영은 청소년문화의집 고유기능과 맞지 않음을 설명하고 변경을 권고함 ※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방과후아카데미 출석부 필히 확인 	

	<p>○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p> <p>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p>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p>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p> <p>※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지표의 법 위반여부 판단 기준</p> <p>-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률'과 다른 유의 연간이용가능인원 대비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40%를 초과할 경우 법 기준 위반임. (위 평정기준에서 청소년이용율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p>
<p>평가자료</p>	<p>시설이용현황대장,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 방과후아카데미 출석부</p>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의 시설이용 이용자 수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80%이상
	우 수(4)	70%이상 ~ 80%미만
	보 통(3)	60%이상 ~ 70%미만
	미 흡(2)	50%이상 ~ 60%미만
	매우미흡(1)	50%미만
평가요소	$\left\{ \frac{2025년시설이용청소년수}{297일} + \frac{2026년시설이용청소년수}{297일} \right\} / 2 \times 100 = [\quad]\%$ <div style="text-align: center;">수용정원()명</div>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관련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 [지표 2.1.1]의 연간 청소년이용자 인원 기준 - 산출 인원 기준 : 연간 일별 평균 이용자 수 산출(365일에서 관공서 공휴일 수 차감, 2025년 68일, 2026년 68일 각각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식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시설 공사 등)로 휴관 일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차감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별 평균이용인원 산출 • 수용정원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정원 기준 : 1회에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공식적 등록 자료 활용 - 평가기간 내 수용정원 변경 시 평균값 적용(소수점 2자리 반올림) - 수용정원은 동시 이용 가능 인원으로 이용자 수에 따라 일별 평균 이용 인원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시설 공간 이용의 회전율에 차이) - 지자체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등록 시 산정한 수용정원이 현재의 시설 공간 구조 및 운영체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식적인 수용정원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로 이를 기준으로 함 <p>※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수용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필요</p> <p>※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 수용정원 대비 지역청소년의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평정기준의 2등급 범위 내에서 가점 반영 가능</p>	
평가자료	이용현황관리대장,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평가항목	2.1 청소년 이용	
평가지표	2.1.3 청소년 자율적 문화 공간 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개별 청소년들의 이용에 특별한 제한 없이 전체 공간을 개별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0% 이상
	우 수(4)	40~50% 미만
	보 통(3)	30~40% 미만
	미 흡(2)	10~30% 미만
	매우미흡(1)	10% 미만
평가요소	$\frac{2025년 + 2026년\ 자율적\ 문화공간\ 청소년\ 이용자\ 수(\quad)명}{2025년 + 2026년\ 청소년\ 이용자\ 수(\quad)명} \times 100 = [\quad]\%$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 내 정해진 사업 외에 개별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용/활동, 자발적인 문화체험과 만남과 소통의 공간 시설로서의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함 • 자율적 문화 공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인 문화공간의 의미는 인터넷부스, 북카페, 노래방, 게임방, 영화방, 포켓볼 등과 같은 공간으로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신청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말함 • 인원 관련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이용자 수 : [지표 2.1.1] 청소년 이용자 수 - 자율적 문화 공간 이용자 수 : [지표 2.1.1] 청소년 이용자 수에서 시설 내·외 활동프로그램, 대관 이용자를 제외한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신청하고 활용한 이용자 수 - 자율적인 문화공간내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나 시설 등의 관리상태나 청소년의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함. 	
평가자료	이용현황 관리대장, 시설 공간별 이용자 관리대장	

평가항목	2.2 청소년 참여도	
평가지표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참여보장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문화의집 운영에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7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6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3개 이하 만족 혹은 운영위원회 없음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월 1회 이상 연간 10회 이상 회의를 운영하였다.	
	3) 회의 참석률이 연평균 50% 이상이다.	
	4) 문화의집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5)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제안한 실적이 있다.	
	6)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다.	
7) 문화의집장과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임 - 개별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단순한 자치회 조직이 아닌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의 적극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p>※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의사결정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는 형태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사업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였을 경우 평정기준 '미흡' 처리 <p>[참고사항]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 문화의집의 제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모니터링 -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의 구성·활동과 관련된 실행계획서의 작성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관련 계획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회의운영 : 공식적으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실적을 확인(임원회의는 제외) - 회의참석 : 연간 개최된 모든 전체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의 평균 출석률 - 모니터링 :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된 계획 및 결과 자료를 토대로 확인 - 의견반영 : 내부결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협의-반영된 경우를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제안은 내용에 따라 제외하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제안은 내용의 수준에 따라 인정 ●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과 실적을 평가함 -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실적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함(동아리 실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아리 활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해야 함(예산, 자체 활동 등) ※ 회의중심 평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적용 인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및 연간운영계획,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실적(회의록 등), 운영위원회 의견반영 자료 문서(결재)

평가항목	2.2 청소년 참여도	
평가지표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스스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만족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동아리 운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동아리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 실적이 있다.	
	3) 시설 내 동아리연합회가 구성·운영되어 있거나 동아리 연합활동 실적이 있다.	
	4) 동아리별 활동계획 및 일지 등이 관리되고 있다.	
5) 동아리 관련 대외·교류활동 참가 또는 공모사업 신청 실적이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 수준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통합하여 평가함 -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이용 및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핵심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함 • 인정대상 동아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집의 자체 소속 동아리로 신청 및 가입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함 - 외부(타 단체, 학교 소속 동아리 등)의 등록 및 단순한 시설 대관은 제외함 - 기타 문화의집 내 입주 타 기관에서 조직한 동아리는 제외함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 지원계획 : 연간 단위의 전체 동아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동아리 활동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인정 범위 : 문화의집 자체 및 외부 지원 등 총 비용 기준 - 동아리 회원 수 : 결과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동아리별 실제 회원 수의 합산 인원 - 자율적 운영체제 인정 범위 : 자체 모집, 선·후배 연계, 자율적인 모임, 활동 관리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동아리별 운영 결과 자료 및 인터뷰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 수준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통합하여 평가함 -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이용 및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핵심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함 • 인정대상 동아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집의 자체 소속 동아리로 신청 및 가입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함 - 외부(타 단체, 학교 소속 동아리 등)의 등록 및 단순한 시설 대관은 제외함 - 기타 문화의집 내 입주 타 기관에서 조직한 동아리는 제외함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 지원계획 : 연간 단위의 전체 동아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동아리 활동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인정 범위 : 문화의집 자체 및 외부 지원 등 총 비용 기준 - 동아리 회원 수 : 결과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동아리별 실제 회원 수의 합산 인원 - 자율적 운영체제 인정 범위 : 자체 모집, 선·후배 연계, 자율적인 모임, 활동 관리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동아리별 운영 결과 자료 및 인터뷰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동아리 활동 지원 수준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통합하여 평가함 -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이용 및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핵심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함 • 인정대상 동아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집의 자체 소속 동아리로 신청 및 가입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함 - 외부(타 단체, 학교 소속 동아리 등)의 등록 및 단순한 시설 대관은 제외함 - 기타 문화의집 내 입주 타 기관에서 조직한 동아리는 제외함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 지원계획 : 연간 단위의 전체 동아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동아리 활동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인정 범위 : 문화의집 자체 및 외부 지원 등 총 비용 기준 - 동아리 회원 수 : 결과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동아리별 실제 회원 수의 합산 인원 - 자율적 운영체제 인정 범위 : 자체 모집, 선·후배 연계, 자율적인 모임, 활동 관리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동아리별 운영 결과 자료 및 인터뷰로 판단) 	
평가자료	청소년동아리 운영규정 및 연간운영계획, 청소년동아리현황(청소년동아리 심의결과), 청소년동아리활동 실적 보고 자료, 청소년동아리별 활동계획 및 일지	

평가항목	3.1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평가지표	3.1.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5점 이상					
	우 수(4)	3.5점 이상 ~ 4.5점 미만					
	보 통(3)	2.5점 이상 ~ 3.5점 미만					
	미 흡(2)	1.5점 이상 ~ 2.5점 미만					
	매우미흡(1)	1.5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 프로그램이 있다.		5	1			
	2)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신규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4) 프로그램 평가계획이 체계적이다.		5	4	3	2	1
5)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구체적이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 유형별 고유 기능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 - 2년간 진행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활동을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프로그램: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1개 이상의 신규 프로그램 - 평가대상프로그램: 연간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계획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수와 내용에 따라 평가 2) 개인이 혼자 개발한 프로그램과 팀이나 워크숍 등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 3) 만족도조사, 의견조사, 면접조사 등의 여부를 통하여 판단 4)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프로그램 1) 계획서의 체계성: 계획서로서의 구성 요건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정 2) 환류체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는지를 확인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프로그램 :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 프로그램이 있으면 5점, 없으면 1점 부여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 실적이 있으면 5점, 없으면 1점 부여
<p>평가자료</p>	<p>2025, 2026년도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회의 또는 워크숍 진행 실적,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개발관련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2025, 2026년 사업(프로그램)운영계획서 및 단위 사업별 실행계획서, 2025, 2026년 사업(프로그램) 결과 및 실적보고서 등</p>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고유한 기능으로서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총점 ()점					
	매우우수(5)	80점 이상				
	우 수(4)	70점 이상 ~ 80점 미만				
	보 통(3)	60점 이상 ~ 70점 미만				
	미 흡(2)	50점 이상 ~ 60점 미만				
매우미흡(1)	50점 미만					
평가요소	프로그램 유형	사업량 산정 기준	사업수	가중치	점수	
	일회성 프로그램	1회 운영		× 0.5	점	
	정기 프로그램	2~4회 운영		× 2	점	
		5~7회 운영		× 3	점	
		8~10회 운영		× 4	점	
		11회 이상		× 5	점	
	행사 프로그램 (축제, 전시, 캠프 등)	1일 운영		× 2	점	
2일 이상 운영			× 3	점		
총점(A)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현황을 평가 - 일회성의 단시간 활동보다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 정기형 프로그램의 횟수는 실제 참가자들이 모여서 활동을 진행한 횟수를 의미함 • 평가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의 목표, 취지, 방향에 부합되는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단위 활동/매뉴얼이 아닌 사업계획서에 편성되어 실행된 사업(프로젝트)을 의미함 -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계획과 과정, 절차에 따라 운영된 경우 비 예산 사업도 인정 -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또는 외부의 장소에 관계없이 문화의집에서 주관한 프로그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인정 범위(* 개별적 계획서를 작성-실행한 사업의 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프로그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회 활동 - 정기 프로그램 :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활동 - 행사 프로그램 : 청소년문화의집 주최·주관으로 운영한 축제, 전시, 캠프 등 - 방과후아카데미를 정기프로그램 인정 - 동아리 전체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각각 1개의 정기프로그램으로 인정 - A프로그램을 25년에 운영하고, 26년에도 운영한 경우는 2개로 인정 • 제외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집 내 타 기관 사업(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 학교에서 단순히 시설을 대관한 경우만 제외 •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지역적 특징(도서산간지역 등)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 수(인구소멸지역 등)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평정기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음. 					
	평가자료	2025, 2026년 청소년활동 사업(프로그램 현황) 현황, 2025, 2026년 결과보고서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2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수련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2개 이상
	보 통(3)	1개
	매우미흡(1)	0개
평가요소	• 실제 운영한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실적이 확인된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수를 평가함 • 평가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함 - 인증받은 프로그램 중에서 2년간 운영한 총 프로그램 수를 평가함. - 동일 인증프로그램을 2년간 10회 실시하였다더라도 1개로 인정 - 인증 받은 후 실제 실시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음. - 인증활동 운영 실적은 e-청소년에 등재되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p>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p> <p>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p> <p>라.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평가자료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보고서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3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고유한 기능인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30%이상
	우 수(4)	25%이상 ~ 30%미만
	보 통(3)	20%이상 ~ 25%미만
	미 흡(2)	15%이상 ~ 20%미만
	매우미흡(1)	15%미만
평가요소	$\frac{\text{청소년활동사업비 ()천원}}{\text{전체사업비 ()천원}}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활동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원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표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의 비중을 평가함 • 산정 범위 : 2025, 2026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사업비 : [지표 3.2.1]의 사업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관련 지출액을 의미함. - 전체사업비 : 연도별 결산서 기준, 포함된 모든 예산규모를 의미함. <p>* 지자체 설립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복합시설인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지출되는 모든 경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함.</p>	
평가자료	2025, 2025년 예산서 및 결산서, 2025, 2026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업별 예산 지출 관련 자료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점					
	우 수(4)	4점 이상 ~ 5점 미만					
	보 통(3)	3점 이상 ~ 4점 미만					
	미 흡(2)	2점 이상 ~ 3점 미만					
	매우미흡(1)	2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5	4	3	2	1
	2) 청소년의 활동참여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도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5	4	3	2	1
	4) 프로그램 예산 등 자원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5	4	3	2	1
	5) 청소년활동의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 실시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평가에 한계가 있어 각 시설에서 수행한 사업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평가를 실시함 • 평가의 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3.2.1]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함 - 각 시설에서 제출한 2025, 2026년도 각 3개 프로그램 중 평가위원이 각각 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은 평가요소별로 평가 후 합의하여 최종 평정을 실시함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과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함 - 청소년 활동참여성과 기록, 관리 :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참여 후 청소년들의 변화, 그리고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추후관리 등을 기록, 관리 						
평가자료	2025, 2026년 동안 시행되어 완료 된 사업(프로그램) 각 3종						

평가항목	4.1 직원 확보율												
평가지표	4.1.1 직원 확보의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 이상											
	우 수(4)	4% 이상~ 5% 미만											
	보 통(3)	3% 이상~ 4% 미만											
	미 흡(2)	2% 이상~ 3% 미만											
	매우미흡(1)	2% 미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p>(A) 전체 직원 확보율</p> $\frac{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수용정원()명} \times 100 = []\ %$												
	<p>(B) 정규직원 확보율</p> $\frac{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정규\ 직원수()명}{수용정원()} \times 100 = []\ %$												
$(A)확보율 + (B)확보율 / 2 = \quad \quad \quad \%$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중사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수 :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table border="1"> <thead> <tr> <th>보험종류</th> <th>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연금</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d rowspan="4">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 </tr> <tr> <td>건강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고용보험</td> <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 </tr> </tbody> </table>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범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 계약직 포함)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는 정규직에 포함 * 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구분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정규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제외함 * 정규직원 중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미확보한 경우는 육아휴직자는 정규직원 수와 전체직원 수에 미포함하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정규직원 수, 전체직원 수에 각 1명으로 인정 * 특정 월의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중간 퇴직자)는 당월 직원 인력으로 인정 													

	<p>- 정규직원 제외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2년 이하 모두)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직원을 말함. * 수련원 내 간접 계약직원(위생, 식당, 시설관리 등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수련원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은 직원 범위에서 제외 * 계약이 해지되어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근무사실 확인은 기존 근무계약서나 기 지급한 급여표 등을 통해 확인함. <p>•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 및 겸직 관장. 단, 위탁 단체의 대표자로 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어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문화의집 급여 지급 시 직원 인정) - 시설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부 부서로 운영할 경우에도 제외(인건비 자원 기준, 단 문화의집 인건비에 의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문화의집 직원에 포함) <p>※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수용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필요</p>
평가자료	연간 직원명단 및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명세서 및 4대 보험 지급 관련 자료

평가항목	4.1 직원 확보율										
평가지표	4.1.2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 수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사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월평균 2명 이상									
	우 수(4)	월평균 1명 초과 ~ 2명 미만									
	보 통(3)	월평균 1명									
	매우미흡(0)	법적 배치 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여부 확인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월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수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을 말함(무기계약직 포함)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 직원 중 계약직 직원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 미소지자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										
	인원기준(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최소인원)							
	-	1인 이상	-	1인 이상							
<p>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p> <p>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p> <p>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p> <p>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p>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p> <p>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p> <p>가. 청소년수련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0%;">배치대상</th> <th>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청소년수련관</td> <td>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td> </tr> <tr> <td>청소년문화의집</td> <td>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td> </tr> <tr> <td>청소년특화시설</td> <td>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td> </tr> </tbody> </table>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평가자료											
직원명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자격취득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출력), 급여명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25시간 이상
	우 수(4)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보 통(3)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미 흡(2)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매우미흡(1)	10시간 미만
평가요소	$\frac{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text{전체}\ \text{직원}\ \text{직무연수}\ \text{총}\ \text{참여시간}\ (\quad)\ \text{시간}}{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text{월평균}\ \text{전체}\ \text{직원}\ \text{수}\ (\quad)\ \text{명}} = [\quad]\ \text{시간}$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전문성 개발도 필요함 • 직무연수 대상 전체직원 범위 : 4.1.1의 전체직원 범위에서 미화, 경비, 운전, 조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직원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정규직원 + 비정규직원(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로 이에는 청소년지도사 외에도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직원 등도 포함되며, 회계직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참여시간도 포함됨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및 외부 직무연수 모두 포함 - 내부연수 : 외부강사 초청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을 말함 - 외부연수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직무연수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 연수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명칭 및 목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상으로 함 *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무연수를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경우는 직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 이수시간의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은 직무연수 참여시간 기준은 1일 8시간, 반일 4시간으로 함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 - 해외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간 퇴사자의 교육연수 참여시간 포함 - 자격인정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 청소년지도사 자격 급수 향상에 따른 자격 연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인정 -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관련 기안문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학습, 관련 유튜브 지정 채널 등)의 학습시간은 50%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해당 직종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진행하는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예: 성폭력예방교육 등)은 제외 - 문화의집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회의는 제외 - 평가지표 4.2.4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수는 제외 - 직무연수를 목표로 하지 않은 여행 또는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 정책토론회 형태로 운영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의 참가 또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사업) 설명회 참가는 제외 - 출산 및 육아휴가로 인해 장기간(1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대상에서 제외
<p>평가자료</p>	<p>연간 직원 직무연수계획, 출장명령서, 내부기안, 수료증 등 관련 문서</p>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원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12개 이상 시행
	우 수(4)	평가요소 중 9~11개 시행
	보 통(3)	평가요소 중 7~8개 시행
	미 흡(2)	평가요소 중 5~6개 시행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4개 이하 시행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정기적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하고 있다.	
	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6)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 직원의 경조사예 대한 경조사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8)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9)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11) 직원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3)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중사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3월 31일까지 2년간 정규직 및 계약직원, 배치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PM/SM) 그 가족의 복리후생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자체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를 말하며, 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그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인정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3)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우수직원 국내외연수 및 포상금 등)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부교육연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 	

	<p>6) 초과근무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7) 직원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8) 상여금 및 성과급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 연봉제의 경우에 관련 증빙 확인 시 인정 9) 가족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10)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중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어느 하나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 11) 사내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2회 이상 실시되고 있을 때 인정 * 청소년재단 동호회 등도 인정</p> <p>• 제외대상 - 문화의집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p>
평가자료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관련문서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등 확인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평정기준	매우우수(5)	성범죄 경력 모두 확인
	매우미흡(0)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요소	● 전체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임.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 공적 문서 모두 인정) 유무에 대해서 현장 방문시 확인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시설에 상시로 출입하는 모든 성인의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경력 확인은 법적 의무사항임. -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 미흡 '0'점 평정 <p>- 직원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를 실시한 경우 전반적 발전 노력 수준 지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2029년부터는 별도 평가요소로 추가 예정)</p> <p>● 직원범위 : 2025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수련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일용직, 강사, 시설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종사자의 경우도 포함)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p>●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p> <p>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p> <p>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p>	

	<p>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5. 4. 11.></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p> <p>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p> <p>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p> <p>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p>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p> <p>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5. 4. 11.></p> <p>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p> <p>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평가자료	<p>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p>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개 교육 모두 실시																				
	매우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실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육실시 유무 (○, ×)</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2025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6년</th> </tr> </thead> <tbody> <tr> <td>1) 성희롱예방교육</td> <td></td> <td></td> </tr> <tr> <td>2) 개인정보보호법교육</td> <td></td> <td></td> </tr> <tr> <td>3) 산업안전보건교육</td> <td></td> <td></td> </tr> <tr> <td>4) 장애인인식개선교육</td> <td></td> <td></td> </tr> <tr> <td>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교육실시 유무 (○, ×)		2025년	2026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요소항목	교육실시 유무 (○, ×)																				
2025년		2026년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어느 한해라도 미실시의 경우에는 미실시로 평가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교육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평가요소 3)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제외(실시로 인정) - 식당 등 하청업체의 직원이 시설에 상주할 경우, 해당 직원의 교육은 하청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제시된 5개 의무교육 이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각종 의무교육(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한 경우 평가지표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관련 가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의무교육 제외범위

- 안전 분야별(전기, 가스 등)로 직원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제시된 5개 이외의 특정 직무 및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수강은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
- 청소년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화·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성)으로 구성된 사업
-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p>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제외</p> <p>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 <p>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p> <p>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기간	• 현장 방문평가시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모두 준수	
	매우미흡(0)	평가요소 중 1개라도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구분	기준	O . X 여부
	1) 활동시설	1. 공통기준 나목의 1)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아래 평가요소 내용 참조).	
	2) 휴게시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평가의 중점 사항 - 설치된 시설의 내역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 평가방법: - 평가자료 확인 후, 시설 내 활동환경을 시찰·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 평가자료 검토 후, 현재 시설의 공간 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평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시설기준[별표 3] - 1. 공통기준 나목의 1)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기 준
1) 실내 집회장	<p>가)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p> <p>나) 둘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p>
5) 특성화 수련 활동장	<p>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나)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다) 봉사과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 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신체의 강건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바)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 등),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사)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p>
6) 자치 활동실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강의실	<p>가)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나) 칠판·교탁·책상·결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p>
평가자료	시설 허가서류, 시설 총별 평면도, 현장 방문시찰,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허가 사항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2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 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과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6개 항목 이상 해당
	우 수(4)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해당
	보 통(3)	평가요소 중 4개 항목 해당
	미 흡(2)	평가요소 중 3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와 재난대응계획 모두 미수립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였다.	
	4)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5)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6)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7) 재난대응계획서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시설물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 단순 소방계획서만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로 인정할 수 없음. - 재난대응계획서는 재난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립하는 것을 적극 권장 (29년 평가부터 별도 평가항목 구성 예정)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대상은 생활관, 체육시설, 실·내외 집회장, 식당,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는 안전관리 대상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 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시설의 특성 및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재난대응 계획서 등 현장실사 기준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3. 이용자 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프로그램에 참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미흡(0)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td> <td></td> </tr> <tr> <td>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td> <td></td> </tr> <tr> <td>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제반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으로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비상대피도 도면이 현 위치와 맞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p>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p> <p>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p> <p>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p>평가자료</p>	<p>프로그램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관련 공지 여부 등</p>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1년간 12회)
	3점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일부 보고
	1점	자체 안전점검 일부 실시와 지자체 미보고
평가요소	평가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한 후 위의 평정기준을 적용함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자체안전점검 및 지자체보고 관련 문서(평가자료)를 확인하고 평정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자체 청소년문화의집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여부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신규 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등록 이후 안전점검 실적으로 평가 <p>※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 자체적인 내부결재를 진행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5 시설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청소년활동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1일 ~ 2027년 방문평가시 현재까지 	
평정기준	5점	2025년부터 2027년 방문평가 현재까지 3개년도 모두 보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
	2점	2024년부터 2026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기존 기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함.
	0점	2024년부터 2026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일시라도 시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가입 기준에도 미달
평가요소	평가기간 내 각 년도(2025-2026년) 및 2027년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3개년 모두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확보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여 평정함.(다만, 타 보험의 경우에도 평가요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평가요사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23.8.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인 경우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 1억5천만원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할 경우 0점 처리)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담보내역별 보상한도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상 1사고당 총보상 한도액이 빈칸이거나 무제한 또는 숫자로 9999999999 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면 총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으로 시설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안전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p>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p>평가자료</p>	<p>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등</p>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6 프로그램 및 시설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시설 운영대표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2) 시설 직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프로그램 활동공간이 안전하다		5	4	3	2	1
	4) 안전을 위협할만한 시설의 위험요소가 없다		5	4	3	2	1
5)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점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프로그램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성 여부 - 문화의집 내 시설 위험요소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5점, 그렇지 않은 경우 1점 부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p> <p>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p>평가자료</p>	<p>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p>

평가항목	6.1 대외협력 및 홍보						
평가지표	6.1.1 대외협력 및 참여정도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타 기관 및 시설·단체, 교육청 및 학교와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등에서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대외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2) 연계대상 및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4	3	2	1
	4)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4	3	2	1
	5)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현장실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평가위원의 자료 확인을 통하여 실적을 인정한 후 정성평가.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범위 : 전국 - 업무협력을 위한 시설 자체의 방향, 노력과 실적 수준 - 시설 간 연계 협력은 단순 업무 협조가 아닌 공동사업 추진 등을 말함 ※ 평가요소 5)의 경우 평가위원이 해당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농산어촌지역 등 현장실습 참여 자체가 어려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음.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지역연계 기관 및 학교의 범위는 공식적인 협력 사업을 1회 이상 운영한 기관 - 공식적인 협력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공동주관 및 운영,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지원이나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이 있을 경우 인정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제휴 계약 등 협력관계의 지속성, 충실성 수준(MOU외 이에 준하는 공식적 협력 체제를 갖춘 경우 인정-문서화 전제) - 사업 중심의 실제적인 협력 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책과 협력 내용(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내용의 협력 수준)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관에 대한 단순 대관은 제외함 ※ 위탁운영법인의 연계협력 실적은 제외, 단 시설 명칭이 기재되어 함께 참여 진행 시 인정 						
	평가자료						
	지역사회 연계협력계획서, 협력제휴 증명자료, 기타 협력을 위한 실적자료						

평가항목	6.1 대외협력 및 홍보					
평가지표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 내 인지도 확보, 이용의 활성화,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균점수 5점				
	우수(4)	평균점수 4점 이상 ~ 5점 미만				
	보통(3)	평균점수 3점 이상 ~ 4점 미만				
	미흡(2)	평균점수 2점 이상 ~ 3점 미만				
	매우미흡(1)	평균점수 2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5	4	3	2	1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홍보대상별 홍보방법은 적합하다.	5	4	3	2	1
	4) 청소년활동에 대한 모집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5	4	3	2	1
	5) 청소년활동 성과중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평가요소를 확인하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소 수를 산출하여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1)홍보계획의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평가요소 2)홍보대상 : 지역 내 청소년 현황,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청소년문화의집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평가요소 3) 홍보방법(사례) : 청소년홍보 동아리 모임 운영(기자단, 홍보 대사 등), 인터넷, SNS, 팸플릿, 현수막,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보도자료가 기사화 된 것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출한 실적도 포함 - 평가요소 4)청소년활동 모집 홍보 : 행사안내 및 참가자 중심의 홍보(SNS, 전단지,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 중심으로 평가) - 평가요소 5) 성과중심 홍보 : 홍보내용이 행사안내 및 참가자 모집, 단순 사실 중심이 아닌 청소년활동의 주요 성과나 프로그램 효과 등을 알리는 홍보(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적, 참여 후 긍정적 변화 등)를 의미함.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평가항목	7.1 종합평가	
평가지표	7.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평가방향	평가대상 시설은 이전에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법적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현장 방문평가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이행
	보 통(3)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부분 이행
	미 흡(0)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미이행
평가요소	•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여부로 판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기존 법 관련 지표별 평가결과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과 개선 조치한 내용을 비교하여 평정 •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사항 중 권고사항은 제외하고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평정함. - 이전 평가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었던 시설과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매우우수(5)로 평정 	
평가자료	시설별 평가결과보고서, 개선 조치한 지표 입증 자료	

평가항목	7.1 종합평가		
평가지표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준		
평정기준		2025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2026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매우우수(2.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 수(2)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 통(1.5)	보통임	보통임
	미 흡(1)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매우미흡(0.5)	법 관련 10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법 관련 10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2025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점수 + 2026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점수 = 총점 () 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 법 관련 지표별 평가결과(최하점 부여 지표 수)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철학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지표 10개 중 평점 결과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를 확인 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가산점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개 이상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가점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p>*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신고여부 평가 -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 평가 - 기타 발전노력과 관련된 사항(관련 실적 자료 확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수행 시 가산점 부여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증진을 위해 기관차원의 지원 실적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 정부 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p>평가자료</p>	<p>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p>

3. 2027년 청소년특화시설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7개 영역 - 11개 항목 - 28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1. 운영 및 관리 (11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5	0.4	2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4	2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5	1	5	●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0.4	2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점)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1	5	●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8	4	
	2.2 청소년 참여도	6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	0.6	3	●
			2.2.2 특화전문 활동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0.6	3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16점)	3.1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4	3.1.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5	0.8	4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의 운영	12	3.2.1 청소년 특화전문 활동 프로그램의 비율	5	0.8	3	
			3.2.2 청소년 특화전문 활동 사업비 수준	5	0.8	4	
			3.2.3 청소년 특화전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5	1.0	5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5	0.8	4	
			4.1.2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5	0.8	4	●

평가영역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법 관련 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안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5	0.6	3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5	0.6	3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등 확인 여부	5	0.4	2	●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5	0.8	4	●
5. 시설기준 및 안전 (23점)	5.1 시설기준 및 안전	23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5	0.8	4	●
			5.1.2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5	0.8	4	
			5.1.3 이용자의 안전관리	5	0.8	4	●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5	0.8	4	●
			5.1.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0.6	3	●
			5.1.6 프로그램 및 시설안전관리	5	0.8	4	
6. 대외협력 및 홍보 (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참여정도	5	0.6	3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5	0.4	2	
7. 종합평가 (10점)	7.1 종합평가	10	7.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5	1.0	5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	1.0	5	
합계						100	

3)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을 위해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특화시설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6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청소년정책 및 환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5	4	3	2	1
	2) 중·장기 발전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3) 분야별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4) 특성화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5) 발전계획에 적합하게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6) 중장기목표에 대한 이행관리(성과평가 등)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6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정량·정성)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정책과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특화시설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목표와 연계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3): 분야별 추진계획이라 함은 조직, 프로그램, 안전, 재난대책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의미함.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특화시설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26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26년 12월로 종료되어 202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대상 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계획의 승인, 예산반영 부분을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것
평가자료	특화시설 (중·장기)발전계획서, 수탁계획서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특화 활동 및 청소년활동사업,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2026년 연간 운영계획서														
평정기준	• 평점 점수 : 평균 ()점(최대 5점~최소 1점)(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후, 첫째 자리까지만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2) 전년도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자체 또는 외부)					5	4	3	2	1	5	4	3	2	1
	3)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5	4	3	2	1
	4) 사업별 추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다.					5	4	3	2	1	5	4	3	2	1
	연도별 평균 점수					(A) 점					(B) 점				
총점 (25년 평균 점수(A) + 26년 평균 점수 (B)) / 2 = 2년간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청소년전문활동 중심의 특화시설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건의사항 공문서로 만든 자료 비교 확인 - 청소년 만족도, 욕구조사 반영 여부 확인 연간 청소년특화시설 운영계획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계획이 아닌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특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평가 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시설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 2025년과 2026년 계획서를 별도로 평가함 														
평가자료	연간(2025, 2026) 청소년특화시설 운영계획서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및 시설장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평가 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5개 항목 모두 준수
	우 수(4)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3개 준수
	보 통(3)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2개 준수
	미 흡(2)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준수하고 있고, 다른 평가요소 4개 중 1개 준수
	매우미흡(1)	평가요소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 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를 미준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평가기간 내 시설장이 일치한다.	
	3) 운영대표자는 상근하고 있다.	
	4) 시설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공식 명칭(예: 원장, 관장, 센터장 등)을 사용하고 있다.	
5)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진흥법제15조(결격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특화시설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특화시설에서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 운영대표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유권해석/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인정됨 - 평가기간 중 재임한 운영대표자 모두 확인 - 단, 수탁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수탁법인의 대표(예: 재단 이사장)가 결재하는 경우에는 "5) 최종결재권자의 성명이 시설장과 일치한다"를 인정(예: 인사, 예산의 경우에 위임전결에서 예외로 함) 	

[참고사항] 성평등가족부 지침(2026년 1월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설립자 : 건물주(지자체 장 등)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센터장 등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시설의 장)
 -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시설장)

○ 평가요소 1)번 관련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시행규칙 제7조)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청소년지도업무 종사 내용 포함시 인정)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 직위는 제외
 -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중앙부처)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
 - * 읍·면·동은 사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청소년육성관련부서로 보기 어려움
 - * 관리자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인정 범위 → 동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 등 기관장 및 부기관장은 포함되지 않음
- 중앙부처의 예 : 담당자 ~실·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 : 담당자 ~국장(담당관)

○ 수련시설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5조)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의무(법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공공, 민간 등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탁 법인의 대표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될 수 있음(단, 1개 수련시설에 한함) - 운영대표자(시설장)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예산, 인사, 사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p>○ 운영대표자와 설치·운영자의 구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운영 대표(시설장) - 설치자(대표자) : (민간)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 (공공) 지자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p>○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 동일 인물이 여러 시설의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p>☞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자체 내부 유자격자를 운영대표자로 배치(겸직 금지)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조치 <p>☞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법인과 별도로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명칭 및 권한 부여 - 운영대표자(시설장)의 대외적인 공식명칭 사용(시설장 명칭 없이 수탁법인의 부서장 명칭으로 사용 금지) - 기관장이 아닌 일반직원(팀장, 부장 등)은 운영대표자(시설장)가 될 수 없음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특화시설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규정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만족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특화시설 명의를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	
	2) 운영규정 심의 및 관리(제개정 등)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3) 특정 목적의 전문활동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규정이 있다.	
5)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 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의 제정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규정 범위 및 평가요소별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특화시설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회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평가요소 2)의 경우 관련 위원회 등(이사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요소 3)의 경우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 5종 이상의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경우 특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함 - 평가요소 5)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특화시설은 제외(신고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 또는 위탁에 관계없이 청소년특화시설별로 자체적인 명의로 고유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식적 절차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동일 재단 산하에 다수의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등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재단내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는 인정함. 	

	<p>1) 지자체 직영 및 지자체 공단/지자체 산하 운영법인(재단) 소속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이 직영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재단 등 법인 소속 시설인 경우, 관련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또는 재단 규정 등도 인정하여, 이 경우에 평가요소 1) 특화시설 명칭의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었다'도 인정함. - 평가요소 3)의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실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적이거나 독자적인 사무편람, 운영매뉴얼 등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요소 4)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후 실제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인정 <p>2) 위탁시설/(청소년단체 위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의 규정에 특화시설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된 세부사항이 규정화된 경우 인정(내용과 관리 체계를 평가) - 수탁한 수련시설 자체의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 불인정 <p>※ 위·수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정관 성격의 규정을 말함)규정 제·개정 시 시설 자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한 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는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안내</p>
<p>평가자료</p>	<p>청소년특화시설 운영규정집</p>

평가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이용자의 이용 비율을 높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80% 이상
	우 수(4)	70% 이상 ~ 80% 미만
	보 통(3)	60% 이상 ~ 70% 미만
	미 흡(2)	50% 이상 ~ 60% 미만
	매우미흡(1)	50% 미만
평가요소	$\frac{2025년\sim 2026년\ \text{연간}\ \text{청소년}\ \text{이용자}\ \text{수}\ (\quad)\ \text{명}}{2025년\sim 2026년\ \text{연간}\ \text{전체}\ \text{이용자}\ \text{수}\ (\quad)\ \text{명}}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 이용의 형태 중 프로그램 참가가 아닌 건물을 포함하여 물리적인 '시설' 공간의 이용과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p>[참고사항] 이용자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p> <p>1) 이용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에서 제외함.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인원수 범위 : 연인원 적용(동일인이 다수 활동/시설 이용 시 중복 계산) - 유형별 범위 : 일반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시설 이용(상호중복은 제외) - 공간의 범위 :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함 - 주체별 범위 : 특화시설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p>2) 평가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시설 내에 입주한 타 기관 이용자 제외(상담복지센터 등) - 축제, 전시, 공연 등 행사 프로그램의 단순 관람객은 제외(실인원 산출 문제 등 고려) -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개인의 임의적 이용은 제외(편의시설, 야외공간 등) - 특화시설 외부에서 진행된 캠프, 국제/지역간 교류활동,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활동 프로그램 참가인원을 포함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별 출석인원을 합산함 - 청소년특화시설 내에 실시된 청소년여울림마당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의 참여 인원 포함 <p>3)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형 특화시설 : 일별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숙박이용 : 숙박일이 아닌 일별 이용자 수 산정(2박 3일 : 3일 X 숙박인원) 	

	<p>* 일반이용 :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 활동으로 이용한 경우 이용자 수 산정 - 청소년특화시설 내 독서실을 운영하는 청소년특화시설은 독서실이 청소년특화시설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포함하되, 향후 학습형 독서실 운영은 청소년특화시설 고유기능과 맞지 않음을 설명하고 변경을 권고함 ※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필히 확인</p> <p>○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p> <p>○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 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p> <p>※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지표의 법 위반여부 판단 기준 - 법 위반 기준은 위 평정기준인 ‘청소년 이용율’과 다음 유의 - 연간이용가능인원 대비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수가 40%를 초과할 경우 법 기준 위반임. (위 평정기준에서 청소년이용율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p>
<p>평가자료</p>	<p>시설이용현황대장,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p>

평가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지표	2.1.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이용자 수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80%이상
	우 수(4)	70%이상 ~ 80%미만
	보 통(3)	60%이상 ~ 70%미만
	미 흡(2)	50%이상 ~ 60%미만
	매우미흡(1)	50%미만
평가요소	$\left\{ \frac{2025년시설이용청소년수}{297일} + \frac{2026년시설이용청소년수}{297일} \right\} / 2 \times 100 = [\quad]\%$ 수용정원()명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 관련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 : [지표 2.1.1]의 연간 청소년이용자 인원 기준 - 산출 인원 기준 : 연간 일별 평균 이용자 수 산출(365일에서 관공서 공휴일 수 차감, 2025년 68일, 2026년 68일 각각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식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시설 공사 등)로 장기간 휴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차감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별 평균이용인원 산출 수용정원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정원 기준 : 1회에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공식적 등록 자료 활용 - 평가기간 내 수용정원 변경 시 평균값 적용(소수점 2자리 반올림) - 수용정원은 동시 이용 가능 인원으로 이용자 수에 따라 일별 평균 이용 인원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시설 공간 이용의 회전에 차이) - 지자체에서 청소년특화시설 건립 및 등록 시 산정한 수용정원이 현재의 시설 공간 구조 및 운영체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식적인 수용정원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로 이를 기준으로 함 ※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수용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필요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시설의 운영내용 특징(운영 목적 등)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가점을 반영할 수 있음. ※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 수용정원 대비 지역청소년의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평정기준의 2등급 범위 내에서 가점 반영 가능 	
평가자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평가항목	2.2 청소년참여도																	
평가지표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들의 청소년특화시설 운영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6개 이상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2개 이하 만족 혹은 운영위원회 없음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요소항목</th> <th style="width: 30%;">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td> <td></td> </tr> <tr> <td>2) 월 1회 이상 연간 10회 이상 회의 운영하였다.</td> <td></td> </tr> <tr> <td>3) 회의 참석률이 연평균 50% 이상이다.</td> <td></td> </tr> <tr> <td>4) 특화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td> <td></td> </tr> <tr> <td>5)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제안한 실적이 있다.</td> <td></td> </tr> <tr> <td>6)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다.</td> <td></td> </tr> <tr> <td>7) 특화시설장과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였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월 1회 이상 연간 10회 이상 회의 운영하였다.		3) 회의 참석률이 연평균 50% 이상이다.		4) 특화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5)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제안한 실적이 있다.		6)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다.		7) 특화시설장과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였다.	
	요소항목	O . X 여부																
	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월 1회 이상 연간 10회 이상 회의 운영하였다.																	
	3) 회의 참석률이 연평균 50% 이상이다.																	
	4) 특화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5)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제안한 실적이 있다.																	
	6) 공식적으로 운영 관련 의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다.																	
7) 특화시설장과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특화시설 운영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임 - 개별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단순한 자치회 조직이 아닌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의 적극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정책에 의사결정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는 형태 불가 - 수련시설 사업수행 또는 청소년동아리로 운영하였을 경우 평정기준 '미흡' 처리 ※ 특화시설의 운영내용 특징(특성화프로그램의 내용, 이용청소년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평가위원이 평정기준에서 일정 등급 가점을 반영할 수 있음. 																		
<p>[참고사항]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 및 의견제안 - 특화시설의 제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모니터링 -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의 구성·활동과 관련된 실행계획서의 작성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관련 계획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회의운영 : 공식적으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실적을 확인(임원회의는 제외) - 회의참석 : 연간 개최된 모든 전체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의 평균 출석률 - 모니터링 :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된 계획 및 결과 자료를 토대로 확인 - 의견반영 : 내부결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협의-반영된 경우를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제안은 내용에 따라 제외하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제안은 내용의 수준에 따라 인정 ●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과 실적을 평가함 -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실적으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함(동아리 실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아리 활동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해야 함(예산, 자체 활동 등) ※ 회의중심 평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적용 인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및 연간운영계획, 청소년운영위원회 명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실적(회의록 등), 운영위원회 의견반영 자료 문서(결재)

평가항목	2.2 청소년참여도	
평가지표	2.2.2 특화전문 활동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특화된 영역에 따라 전문 동아리를 청소년 스스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5개 만족
	우 수(4)	평가요소 중 4개 만족
	보 통(3)	평가요소 중 3개 만족
	미 흡(2)	평가요소 중 2개 만족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동아리 운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동아리 대상으로 활동비 지원 실적이 있다.	
	3) 시설 내 동아리연합회가 구성·운영되어 있거나 동아리 연합활동 실적이 있다.	
	4) 동아리별 활동계획 및 일지 등이 관리되고 있다.	
5) 동아리 관련 대외·교류활동 참가 또는 공모사업 신청 실적이 있다.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의 성격에 부합되는 동아리의 활동 지원 수준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통합하여 평가함 - 청소년특화시설의 청소년 이용 및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의 핵심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함 ※ 특화시설의 운영내용 특징(특성화프로그램의 내용, 이용청소년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평정기준에서 일정 등급 가점을 반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대상 동아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시설의 자체 소속 동아리로 신청 및 가입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함 - 외부(타 단체, 학교 소속 동아리 등)의 등록 및 단순한 시설 대관은 제외함 - 기타 특화시설 내 입주 타 기관에서 조직한 동아리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 지원 계획 : 연간 단위의 특화전문 동아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에 동아리 활동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계획서로서 목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기본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인정 범위 : 특화시설 자체 및 외부 지원 등 총 비용 기준 - 동아리 수 : 청소년특화시설별 동아리 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동아리 회원 수 : 결과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동아리별 실제 회원 수의 합산 인원 - 자율적 운영체제 인정 범위 : 자체 모집, 선·후배 연계, 자율적인 모임, 활동 관리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동아리별 운영 결과 자료 및 인터뷰로 판단) 	
평가자료	청소년동아리 운영규정 및 연간운영계획, 청소년동아리현황(청소년동아리 심의결과), 청소년동아리활동 실적 보고 자료, 청소년동아리별 활동계획 및 일지	

평가항목	3.1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평가지표	3.1.1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4.5점 이상					
	우 수(4)	3.5점 이상 ~ 4.5점 미만					
	보 통(3)	2.5점 이상 ~ 3.5점 미만					
	미 흡(2)	1.5점 이상 ~ 2.5점 미만					
	매우미흡(1)	1.5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 프로그램이 있다.		5	1			
	2)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신규프로그램 개발시 청소년 등 수요자 의견 및 분야별 시대 변화 등을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5	4	3	2	1
4) 프로그램 평가계획이 체계적이다.		5	4	3	2	1	
5)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구체적이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 유형별 고유 기능에 맞는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 - 2년간 진행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활동을 확인함 • 프로그램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프로그램: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1개 이상의 신규 프로그램 - 평가대상 프로그램: 연간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계획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함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수와 내용에 따라 평가 2) 개인이 혼자 개발한 프로그램과 팀이나 워크숍 등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 3) 만족도조사, 의견조사, 면접조사 등의 여부를 통하여 판단 4)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 - 평가 대상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서의 체계성: 계획서로서의 구성 요건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정 2) 환류체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는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프로그램 :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 프로그램이 있으면 5점, 없으면 1점 부여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신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 실적이 있으면 5점, 없으면 1점 부여
평가자료	<p>2025, 2026년도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회의 또는 워크숍 진행 실적,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개발관련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2025, 2026년 사업(프로그램)운영계획서 및 단위 사업별 실행계획서, 2025, 2026년 사업(프로그램) 결과 및 실적보고서 등</p>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1 청소년 특화전문 활동 프로그램 비율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시설에 부합한 특화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점수 : 총점 ()점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5)</td> <td>90% 이상</td> </tr> <tr> <td>우수(4)</td> <td>80% 이상 ~ 90% 미만</td> </tr> <tr> <td>보통(3)</td> <td>70% 이상 ~ 80% 미만</td> </tr> <tr> <td>미흡(2)</td> <td>60% 이상 ~ 70% 미만</td> </tr> <tr> <td>매우미흡(1)</td> <td>60% 미만</td> </tr> </table>		매우우수(5)	90% 이상	우수(4)	80% 이상 ~ 90% 미만	보통(3)	70% 이상 ~ 80% 미만	미흡(2)	60% 이상 ~ 70% 미만	매우미흡(1)	60% 미만
매우우수(5)	90% 이상											
우수(4)	80% 이상 ~ 90% 미만											
보통(3)	70% 이상 ~ 80% 미만											
미흡(2)	60% 이상 ~ 70% 미만											
매우미흡(1)	60% 미만											
평가요소	$\frac{\text{청소년 특화전문 프로그램 수}(\quad)}{\text{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수}(\quad)}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특화전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현황을 평가 - 전체 프로그램에서 특화전문 프로그램의 활성화 도모 • 평가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의 목표, 취지, 방향에 부합되는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단위 활동/매뉴얼이 아닌 사업계획서에 편성되어 실행된 사업(프로젝트)을 의미함 -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계획과 과정, 절차에 따라 운영된 경우 비예산 사업도 인정 - 청소년특화시설 내부 또는 외부의 장소에 관계없이 특화시설에서 주관한 프로그램 • 제외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 내 타 기관 사업(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 학교에서 단순히 시설을 대관한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제외 											
평가자료	2025, 2026년 청소년활동 사업(프로그램 현황) 현황, 2025, 2026년 결과보고서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2 청소년 특화전문 활동 사업비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고유한 기능에 맞춘 특화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화전문활동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30%이상
	우 수(4)	25%이상 ~ 30%미만
	보 통(3)	20%이상 ~ 25%미만
	미 흡(2)	15%이상 ~ 20%미만
	매우미흡(1)	15%미만
평가요소	$\frac{\text{특화전문활동 사업비 ()천원}}{\text{전체사업비 ()천원}} \times 100 = [\quad \%]$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의 청소년 특화 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원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표로 전체 예산 중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사업비의 비중을 평가함 • 산정 범위 : 2025, 2026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전문활동 사업비 : [지표 3.2.1]의 사업에 따른 특화전문프로그램 지출액을 의미함. - 전체사업비 : 연도별 결산서 기준, 포함된 모든 예산규모를 의미함. <p>* 지자체 설립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복합시설인 경우 청소년특화시설 운영에 지출되는 모든 경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함.</p>	
평가자료	2025년, 2026년 예산서 및 결산서, 2025년, 2026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현황 및 사업별 예산 지출 관련 자료	

평가항목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지표	3.2.3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점				
	우수(4)	4점 이상 ~ 5점 미만				
	보통(3)	3점 이상 ~ 4점 미만				
	미흡(2)	2점 이상 ~ 3점 미만				
	매우미흡(1)	2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5	4	3	2	1
	2) 청소년 활동참여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도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5	4	3	2	1
	4) 프로그램 예산 등 자원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5	4	3	2	1
	5) 청소년활동의 성과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 실시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평가에 한계가 있어 각 시설에서 수행한 사업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평가를 실시함 • 평가의 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3.2.1]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함 - 각 시설에서 제출한 2025, 2026년도 각 3개 프로그램 중 평가위원이 각각 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은 평가요소별로 평가 후 합의하여 최종 평정을 실시함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과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함 - 청소년 활동참여성과 기록, 관리 :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참여 후 청소년들의 변화, 그리고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추후관리 등을 기록, 관리 					
	평가자료	2025, 2026년 동안 시행되어 완료된 사업(프로그램) 각 3종				

평가항목	4.1 직원 확보율	
평가지표	4.1.1 직원 확보의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수용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 이상
	우 수(4)	4% 이상~ 5% 미만
	보 통(3)	3% 이상~ 4% 미만
	미 흡(2)	2% 이상~ 3% 미만
	매우미흡(1)	2% 미만
평가요소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A) 전체 직원 확보율	
	$\frac{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수용정원()명} \times 100 = []\ %$	
	(B) 정규직원 확보율	
$\frac{2025년\ 1월\ 1일\ \sim\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정규\ 직원수()명}{수용정원()} \times 100 = []\ %$		
(A)확보율 + (B)확보율 / 2 = %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관리)	
	• 직원의 범위	
	- 전체 직원 수 :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보험종류	내 용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직원 대상 범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		
- 정규직원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 계약직 포함)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 등)는 정규직에 포함		
* 공무원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기간제(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환경미화원)는 정규직에 포함		
*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구분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정규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제외함		
* 정규직원 중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미확보한 경우는 육아휴직자는 정규직원 수와 전체직원 수에 미포함하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정규직원 수, 전체직원 수에 각 1명으로 인정		
* 특정 월의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중간 퇴직자)는 당월 직원 인력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원 제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2년 이하 모두)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직원을 말함. * 수련원 내 간접 계약직원(위생, 식당, 시설관리 등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한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수련원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은 직원 범위에서 제외 * 계약이 해지되어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근무사실 확인은 기존 근무계약서나 기 지급한 급여표 등을 통해 확인함. ※ 시설규모(연건축면적, 건물 규모 등) 대비 수용정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과대 산정 또는 과소 산정)의 경우라도 수련시설등록증에 기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관련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안내 필요 •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 및 겸직 관장. 단, 위탁 단체의 대표자로 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어 시설장을 겸직한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특화시설 급여 지급 시 직원 인정) - 시설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부 부서로 운영할 경우에도 제외(인건비 재원 기준, 단 특화시설 인건비에 의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특화시설 직원에 포함)
<p>평가자료</p>	<p>연간 직원명단 및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명세서 및 4대 보험 지급 관련 자료</p>

평가항목	4.1 직원 확보율										
평가지표	4.1.2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율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법적 요건에 맞게 청소년지도사를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초과									
	보 통(3)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2급 1명과 3급 1명)									
	매우미흡(0)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여부 확인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월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수를 기준으로 적용 										
평가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 직원을 말함(무기계약직 포함)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특화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 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정원대비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수를 최소 1.5% 이상 확보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 직원 중 계약직 직원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 미소지자 <p>[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인원기준(수용정원)</th> <th style="width: 25%;">기본최소인원</th> <th style="width: 25%;">추가최소인원</th> <th style="width: 25%;">배치기준(최소인원)</th> </tr> </thead> <tbody> <tr> <td>-</td> <td>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td> <td>-</td> <td>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td> </tr> </tbody> </table> <p>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p> <p>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인원기준(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최소인원)	-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인원기준(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최소인원)								
-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p>[별표 5] <u>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u></p> <p>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p> <table border="1" data-bbox="305 445 1258 758"> <thead> <tr> <th data-bbox="305 445 428 485">배치대상</th> <th data-bbox="428 445 1258 485">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5 485 428 600">청소년 수련관</td> <td data-bbox="428 485 1258 600">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td> </tr> <tr> <td data-bbox="305 600 428 681">청소년 문화의집</td> <td data-bbox="428 600 1258 681">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td> </tr> <tr> <td data-bbox="305 681 428 758">청소년 특화시설</td> <td data-bbox="428 681 1258 758">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td> </tr> </tbody> </table>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 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 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평가자료	직원명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자격취득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출력), 급여명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1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시간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직원들이 직무(특히 특화업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30시간 이상
	우 수(4)	2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보 통(3)	20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미 흡(2)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매우미흡(1)	15시간 미만
평가요소	$\frac{\text{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전체 직원 직무연수 총 참여시간 ()시간}}{\text{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월평균 전체 직원 수 ()명}} = []\text{시간}$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 운영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의 전문성 개발도 필요함 • 직무연수 대상 전체직원 범위 : 4.1.1의 전체직원 범위에서 미화, 경비, 운전, 조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정규직원 + 비정규직원(계약직) 모두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제로 이에는 청소년지도사 외에도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직원 등도 포함되며, 회계직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참여시간도 포함됨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및 외부 직무연수 모두 포함 - 내부연수 : 외부강사 초청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을 말함 - 외부연수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직무연수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명칭 및 목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무연수를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경우는 직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 이수시간의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증에 명시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은 직무연수 참여시간 기준은 1일 8시간, 반일 4시간으로 함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1학기당 10시간 인정 - 해외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 준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간 퇴사자의 교육연수 참여시간 포함 - 자격인정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 청소년지도사 자격 급수 향상에 따른 자격 연수 교육 	

	<p>※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관련 기안문 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학습, 관련 유튜브 지정 채널 등)의 학습시간은 50% 인정 <p>•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회의는 제외 - 평가지표 4.2.4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수는 제외 - 직무연수를 목표로 하지 않은 여행 또는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 정책토론회 형태로 운영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의 참가 또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사업) 설명회 참가는 제외 - 출산 및 육아휴가로 인해 장기간(1년 이상) 휴직 시 직무연수 대상에서 제외
평가자료	연간 직원 직무연수계획, 출장명령서, 내부기안, 수료증 등 관련 문서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직원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12개 이상 시행	
	우 수(4)	평가요소 중 9~11개 시행	
	보 통(3)	평가요소 중 7~8개 시행	
	미 흡(2)	평가요소 중 5~6개 시행	
	매우미흡(1)	평가요소 중 4개 이하 시행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정기적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하고 있다.		
	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6)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8)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9)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11) 직원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3)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종사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정규직 및 계약직원, 배치청소년지도사, 그 가족의 복리후생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자체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를 말하며, 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그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인정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3)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우수직원 국내외연수 및 포상금 등)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부교육연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p>5)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또는 지자체의 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면 인정</p> <p>6) 초과근무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p> <p>7) 직원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p> <p>8) 상여금 및 성과급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 연봉제의 경우에 관련 증빙 확인 시 인정</p> <p>9) 가족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p> <p>10)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중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어느 하나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p> <p>11) 사내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2회 이상 실시되고 있을 때 인정 * 청소년재단 동호회 등도 인정</p> <p>• 제외대상 - 특화시설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p>
<p>평가자료</p>	<p>복지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관련문서</p>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등 확인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	
평정기준	매우우수(5)	성범죄 경력 모두 확인
	매우미흡(0)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요소	● 전체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p>	
	<p>● 평가의 중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임.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 공적 문서 모두 인정) 유무에 대해서 현장 방문시 확인 - 직원 채용 시 또는 강사 등 수련시설에 상시로 출입하는 모든 성인의 성범죄 경력 확인(본인증빙 혹은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증빙 등) -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경력 확인은 법적 의무사항임. -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 미흡 '0'점 평정 <p>- 직원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를 실시한 경우 전반적 발전 노력 수준 지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029년부터는 별도 평가요소로 추가 예정)</p> <p>● 직원범위 : 2025년 1월 1일 ~ ~ 평가 진행 현재까지 채용한 전체 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 수련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일용직, 강사, 시설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종사자의 경우도 포함) ※ 외국인 및 다문화 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자(결재권자)가 직접 확인함 <p>● 평가자료 제출 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확인 요청 공문 등으로 같음함 (매년 확인은 권장사항)</p> <p>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p> <p>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p>	

	<p>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5. 4. 11.></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p> <p>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p> <p>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p> <p>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p>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사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화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화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p> <p>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2025. 4. 11.></p> <p>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p> <p>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p>
평가자료	<p>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력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 확인관련 서류(결재문서, 확인서 또는 인터뷰일지 등)</p>

평가항목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	4.2.4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5개 교육 모두 실시																				
	매우미흡(1)	1개 교육이라도 미 실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소항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육 실시 유무 (○, ×)</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2025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6년</th> </tr> </thead> <tbody> <tr> <td>1) 성희롱 예방교육</td> <td></td> <td></td> </tr> <tr> <td>2)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td> <td></td> <td></td> </tr> <tr> <td>3) 산업안전보건교육</td> <td></td> <td></td> </tr> <tr> <td>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td> <td></td> <td></td> </tr> <tr> <td>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교육 실시 유무 (○, ×)		2025년	2026년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소항목	교육 실시 유무 (○, ×)																					
	2025년	2026년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어느 한해라도 미 실시의 경우에는 미 실시로 평가 • 직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교육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간이자료배포 및 게시 등으로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 평가요소 3)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제외(실시로 인정) - 식당 등 하청업체의 직원이 시설에 상주할 경우, 해당 직원의 교육은 하청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제시된 5개 의무교육 이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의무교육(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한 경우 평가지표 7.1.2.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관련 가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의무교육 제외범위

- 안전 분야별(전기, 가스 등)로 직원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제시된 5개 이외의 특정 직무 및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수강은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
- 청소년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화·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성)으로 구성된 사업
-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p>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제외</p> <p>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p> <p>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p> <p>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p> <p>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법정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기간	• 현장방문 평가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모두 준수																							
	매우미흡(0)	평가요소 중 1개라도 미준수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요소항목</th> <th rowspan="2">O . X 여부</th> </tr> <tr> <th>구분</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활동시설</td> <td>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td> <td></td> </tr> <tr> <td>2) 휴게실</td> <td>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3) 지도자실</td> <td>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4) 냉·난방시설</td> <td>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d></td> </tr> <tr> <td>5) 비상설비</td> <td>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td> <td></td> </tr> <tr> <td>6) 기타시설</td> <td>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구분	기준	1) 활동시설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비상설비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요소항목		O . X 여부																						
	구분	기준																							
	1) 활동시설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비상설비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된 시설의 내역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료 확인 후, 시설 내 활동환경을 시찰·검토 후 평가위원 판단 적용 - 평가자료 검토 후, 현재 시설의 공간 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평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p>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p> <p>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마. 특화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활동시설</td> <td>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2) 휴게실</td> <td>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3) 지도자실</td> <td>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4) 냉·난방시설</td> <td>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5) 비상설비</td> <td>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6) 기타시설</td> <td>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7) 수용정원</td> <td>활동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비상설비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수용정원	활동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비상설비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수용정원	활동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p>평가자료</p>	<p>시설 허가서류, 시설 총별 평면도, 현장 방문시찰,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허가 사항</p>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2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 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과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중 6개 항목 이상 해당
	우 수(4)	평가요소 중 5개 항목 해당
	보 통(3)	평가요소 중 4개 항목 해당
	미 흡(2)	평가요소 중 3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와 재난대응계획 모두 미수립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였다.	
	4)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5)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6)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7) 재난대응계획서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시설물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 단순 소방계획서만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로 인정할 수 없음. - 재난대응계획서는 재난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립하는 것을 적극 권장 (29년 평가부터 별도 평가항목 구성 예정)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대상은 생활관, 체육시설, 실·내외 집회장, 식당,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는 안전관리 대상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 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도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시설의 특성 및 재난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의 체계성에 대해 평가함.
평가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재난대응 계획서 등 현장실사 기준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3 이용자의 안전관리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프로그램에 참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우수(5)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모두 해당												
	미흡(0)	평가요소 중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 <th>O . X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td> <td></td> </tr> <tr> <td>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td> <td></td> </tr> <tr> <td>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td> <td></td> </tr> <tr> <td>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td> <td></td> </tr> </tbody> </table>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2)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마련여부													
	3)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 및 안내문 게시 여부													
	4)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 여부													
5)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 제반 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춰야 하므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 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도 포함)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프로그램 참여 외 단순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련 공지 여부 포함(예를 들어, 안전수칙이나 비상대피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 공간에 부착 의무화) *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로 같은 경우 A4용지 등 임시방편으로 부착한 경우와 현 위치와 비상대피로 도면이 맞지 않는 경우 평가요소 3) 'X' 처리 * 프로그램 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개수)·보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 													

	<p>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p> <p>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p> <p>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상병자(傷病者)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防柵)·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p>평가자료</p>	<p>프로그램 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안전 관련 공지 여부 등</p>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1년간 12회)
	3점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일부 보고
	1점	자체 안전점검 일부 실시와 지자체 미보고
평가요소	평가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한 후 위의 평정기준을 적용함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자체안전점검 및 지자체보고 관련 문서(평가자료)를 확인하고 평정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자체 청소년특화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여부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신규 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등록 이후 안전점검 실적으로 평가 <p>※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 자체적인 내부결재를 진행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청소년활동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1일 ~ 2027년 현장 방문평가 시까지 	
평정기준	5점	2025년부터 2027년 현장 방문평가 시까지 3개년도 모두 보험기준에 맞게 보험 가입
	2점	2024년부터 2026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기존 기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함.
	0점	2024년부터 2026년 방문평가시현재까지 일시라도 시설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가입 기준에도 미달
평가요소	평가기간 내 각 년도(2025~2026년) 및 2027년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적합성을 확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3개년 모두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입증권과 약관을 확보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여 평정함.(다만, 타 보험의 경우에도 평가요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 평가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23.8.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인 경우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인 경우 1억5천만원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할 경우 0점 처리)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담보내역별 보상한도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상 1사고당 총보상 한도액이 빈칸이거나 무제한 또는 숫자로 9999999999 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면 총 보상한도를 무한대로 인정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으로 시설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안전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정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p> <p>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p>평가자료</p>	<p>시설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등</p>

평가항목	5.1 시설기준 및 안전
평가지표	5.1.6 프로그램 및 시설안전 관리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활동 공간 및 시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평균 ()점 (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있다		없다		
	1) 시설 운영대표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2) 시설 직원 대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1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프로그램 활동공간이 안전하다	5	4	3	2	1
	4) 안전을 위협할 만한 시설의 위험요소가 없다	5	4	3	2	1
	5) 안전사고가 없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중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안전한 청소년활동 진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표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프로그램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성 여부 - 특화시설 내 시설 위험요소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처리 결과 •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5점, 그렇지 않은 경우 1점 부여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p> <p>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p> <p>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p> <p>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평가자료	안전교육 실적자료,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

평가항목	6.1 대외협력 및 홍보					
평가지표	6.1.1 대외협력 및 참여 정도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타 기관 및 시설·단체, 교육청 및 학교와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등에서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 평점 점수: 평균 ()점 (최대 5점~최소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대외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5	4	3	2	1
	2) 연계대상 및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4	3	2	1
	4)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4	3	2	1
	5)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 현장실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p>◆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평가위원의 자료 확인을 통하여 실적을 인정한 후 정성평가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범위 : 전국 - 업무협력을 위한 시설 자체의 방향, 노력과 실적 수준 - 시설 간 연계 협력은 단순 업무 협조가 아닌 공동사업 추진 등을 말함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지역연계 기관 및 학교의 범위는 공식적인 협력 사업을 1회 이상 운영한 기관 - 공식적인 협력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공동주관 및 운영,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지원이나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이 있을 경우 인정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제휴 계약 등 협력관계의 지속성, 충실성 수준(MOU외 이에 준하는 공식적 협력 체제를 갖춘 경우 인정-문서화 전제) - 사업 중심의 실제적인 협력 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책과 협력 내용(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내용의 협력 수준)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관에 대한 단순 대관은 제외함 <p>※ 위탁운영법인의 연계협력 실적은 제외, 단 시설 명칭이 기재되어 함께 참여 진행 시 인정</p>					
	평가지료	지역사회 연계협력계획서, 협력제휴 증명자료, 기타 협력을 위한 실적자료				

평가항목	6.1 대외협력 및 홍보						
평가지표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지역사회 내 인지도 확보, 이용의 활성화,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균점수 5점					
	우 수(4)	평균점수 4점 이상 ~ 5점 미만					
	보 통(3)	평균점수 3점 이상 ~ 4점 미만					
	미 흡(2)	평균점수 2점 이상 ~ 3점 미만					
	매우미흡(1)	평균점수 2점 미만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1)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5	4	3	2	1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	4	3	2	1
	3) 홍보대상별 홍보방법은 적합하다.		5	4	3	2	1
	4) 청소년활동에 대한 모집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5	4	3	2	1
	5) 청소년활동 성과중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5	4	3	2	1
		총점 () 점 / 5 = 평균점수 () 점					
평가내용	◆ 관련근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평가요소를 확인하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소 수를 산출하여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 ※ 평가요소 5)의 경우 평가위원이 해당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농산어촌지역 등 현장실습 참여 자체가 어려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음.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요소 1)홍보계획의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평가요소 2)홍보대상 : 지역 내 청소년 현황,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청소년특화시설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평가요소 3) 홍보방법(사례) : 청소년홍보 동아리 모임 운영(기자단, 홍보 대사 등), 인터넷, SNS, 팸플릿, 현수막,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보도자료가 기사화 된 것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출한 실적도 포함 - 평가요소 4)청소년활동 모집 홍보 : 행사안내 및 참가자 중심의 홍보(SNS, 전단지,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 중심으로 평가) - 평가요소 5) 성과중심 홍보 : 홍보내용이 행사안내 및 참가자 모집, 단순 사실 중심이 아닌 청소년활동의 주요 성과나 프로그램 효과 등을 알리는 홍보(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적, 참여 후 긍정적 변화 등)를 의미함.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평가항목	7.1 종합평가	
평가지표	7.1.1 이전 평가결과(법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여부	
평가방향	평가 대상 시설은 이전에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법적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현장 방문평가 시까지	
평정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이행
	보 통(3)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부분 이행
	미 흡(0)	(법적 기준 위반) 개선조치 미이행
평가요소	•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여부로 판단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 기존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과 개선 조치한 내용을 비교하여 평정 평가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사항 중 권고사항은 제외하고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평정함. - 이전 평가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없었던 시설과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매우우수(5)로 평정 	
평가자료	시설별 평가결과보고서, 개선 조치한 지표 입증 자료	

평가항목	7.1 종합평가		
평가지표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특화시설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준		
평정기준		2025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2026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매우우수(2.5)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시설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우수(2)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시설 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임
	보통(1.5)	보통임	보통임
	미흡(1)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다소 부족함
	매우미흡(0.5)	법 관련 10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법 관련 10개 지표 중 3개 이상 지표에서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 발전 노력이 매우 부족함
		2025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점수 + 2026년 시설 발전 노력 수준 점수 = 총점 () 점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중심으로 평가 • 법 관련 지표별 평가결과(법 기준을 위반한 지표 수) • 최근 2년간 운영개선 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청소년특화시설로서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철학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지표 10개 중 평점 결과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지표의 개수를 확인 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가산점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관련 10개 지표 중 1개 이상 법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가점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신고여부 평가 -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 평가 - 기타 발전노력과 관련된 사항(관련 실적 자료 확인) - 평가 기간 중 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참여증진을 위해 기관차원의 지원 실적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 정부 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평가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